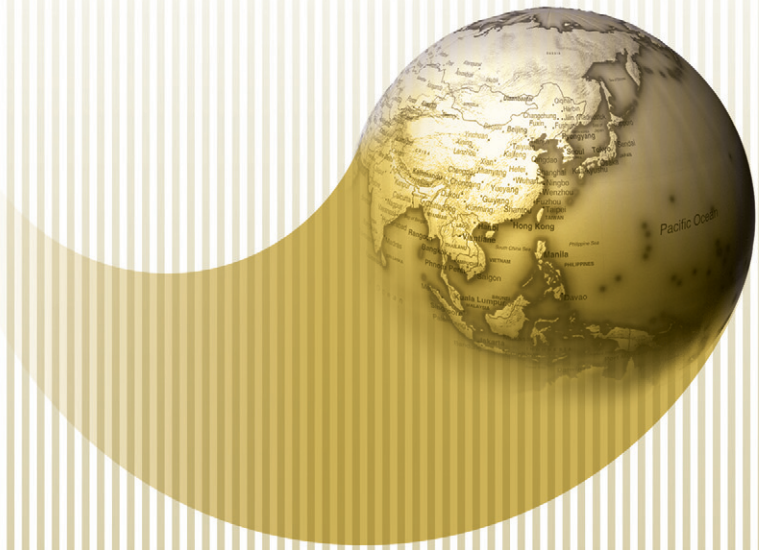
정책연구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용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安炯徒 · 金鍾赫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정책연구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安炯徒 · 金鍾赫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통합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국내적으로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본원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는 2001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등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 의거하여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이 재경부 산하에 출범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행을 총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 금융기관에는 고객 확인,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활동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추가 시행하여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을 범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에 따라 범죄자들은 다른 루트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 중 현재 가장 취약한 분야로 밝혀지고 있는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입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사회적인 신뢰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고객의 업무에 깊숙이 간여하는데 자금세탁을 추진하는 범죄자들은 이 전문직의 전문성, 사회적 위상과 신뢰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

장하려고 시도합니다. 다량의 현금과 고액의 물건을 다루는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들도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권고(2003)를 통해 각국이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전문직과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이 업종 종사자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업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검토함으로써 이 업종 종사자들을 자금세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 업종의 청렴성(Integrity)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제도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안형도 연구위원의 주도하에 김종혁 연구원이 참여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과 사례분석과정에서는 한지경, 김수미 인턴연구원이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 추진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이상제 자문관, 재경부의 황건일 과장, 장보영 사무관, 본원의 조종화 선임연구위원, 윤덕룡 연구위원께서 많은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례분석과정에서 연구진의 설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그리고 변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그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림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李 景 台

국문요약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FATF 권고 2003」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제도 정착과 혐의거래보고제도 개선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5년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200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아 자금세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금융업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전문직을 이용한 수법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직종사자들은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 설립을 통한 범죄수익의 유통과정에 관여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신해 현금입출금, 외환거래, 수표발행, 주식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또한 전문직종사자들은 범죄수익 또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 자금세탁자들로부터 금융상 또는 조세상의 자문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세탁자들이 전문직종사자들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문직종사자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따라서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세탁의 법률상 허점을 막을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통해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고 자금세탁자로부터 이 직종을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과 거래를 육성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전문직과 비금융업이 연관된 국내의 자금세탁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장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Patriot Act를 제정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직종별, 서비스별로 고객, 거래관계, 거래유형 등에 따라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

집·분석하며 이러한 위험도 분석에 의거하여 각 직종별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각 보고주체에 대해서 부문별 자율성을 존중하여 혐의거래 판단 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보고주체 스스로 일반적인 거래(ordinary cases)와 비교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EU AML Directive(2001. 12)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그 범위도 현재 모든 금융기관, 비금융업, 전문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정액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위험성 정도를 각 사업장별로 2～3년마다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전 사업장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이외에도 고액도박거래보고, 국제현금반출입보고, 국제자금이체정보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보고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0년 FINTRAC이 출범한 이후 금융기관, 카지노, 회계사,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세무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 조사 결과 해외 주요국들은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해 고객주의의무,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호주, 영국은 시행 중

이나 미국, 캐나다는 관련 종사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는 이중보고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과범위와 내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3장 국내 현황과 사례 분석에서는 자금세탁의 위험성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및 자금세탁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의식을 조사하였다.

국내 현황부문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의 일반현황, 주요 업무, 자금세탁의 위험성, 자금세탁 발생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변호사는 법무사, 공증인의 업무도 다루고 있으며 그 업무영역이 방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자금세탁에 노출될 수 있다.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은 이미 국내에도 자금세탁 연루사례가 발견되는 등 자금세탁에 취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금세탁 관련 사건기록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전제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횡령 11건, 재산해외도피 10건, 뇌물 9건, 사기 9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네가지 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세탁수법으로는 가·차명거래나 부동산 구입을 통한 자금전환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총 43건의 자금세탁범죄 중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가 관련된 범죄는 10건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2건, 회계사 4건, 카지노 2건, 부동산중개인 4건 등이 자금세탁에 연루 및 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3개 직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FATF의 권고사항과 금융정보분석원 활동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객신원확인과 기록보존은 이미 다수의 종사자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자금세

탁 발생위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자금세탁의 위험이 크다고 대답하였고, 우리나라가 FATF의 권고를 이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가 이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 결과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 또한 FATF 권고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는 해당 직종의 위험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의 위험, 그리고 자금세탁이 미치는 해당 직종의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업종협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에 대해 의무부과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문직종인 세무사, 비금융업의 경마 관련업, 자동차·배 등의 고가물품거래업, 예술작품 및 골동품 등의 거래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례

서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21

1. 연구의 필요성 ····· 22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25
3. 연구방법 ····· 25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 27

1. 미국 ····· 28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 28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 30
   다. 특징 및 시사점 ····· 38
2. 영국 ····· 39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 39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 41
   다. 특징 및 시사점 ····· 45
3. 호주 ····· 46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 46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 48

다. 특징 및 시사점 ····· 54
4. 캐나다 ····· 55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 55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 58
다. 특징 및 시사점 ····· 63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 67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 68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 68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 79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 96
가. 사례 분석의 개요 ····· 96
나. 항목별 분석 ····· 97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 102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104
가. 설문조사의 개요 ····· 104
나. 직종별 분석 ····· 106
다. 항목별 분석 ····· 112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 115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 117
1. 도입방향 ····· 118
가. 제도 도입방식 ····· 118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 119
2. 직종별 도입방안 ····· 120

가. 변호사 ····· 120
나. 회계사 ····· 122
다. 카지노 ····· 124
라. 부동산중개인 ····· 126
마. 귀금속상 ····· 128

제5장 결론 ····· 131

참고문헌 ····· 135

부록 ····· 137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 138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 142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 143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 150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 153

Executive Summary ····· 159

표 차례

표 2-1. 자금세탁 혐의자와 금융기관의 관계 ····· 21
표 2-2. 혐의거래의 형태 및 보고건수: 부동산업 ····· 34
표 2-3. AUSTRAC에 대한 보고 현황(2002년) ····· 48
표 2-4. 파트너십 규제모델 ····· 53
표 2-5. 주요국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현황 ····· 65
표 3-1. 국내 변호사업의 현황 ····· 70
표 3-2. 변호사의 업무 구분 ····· 71
표 3-3. 국내 회계사업 종사자 수 ····· 74
표 3-4. 구성원 수에 따른 회계업 종사자 수 ····· 74
표 3-5. 회계사의 업무 ····· 74
표 3-6. 카지노업체 현황 및 매출액, 입장객(2003년) ····· 80
표 3-7. 카지노의 조직 구성 및 업무 ····· 81
표 3-8. 귀금속 수출입 실적 ····· 89
표 3-9. 금괴 수출입 동향 ····· 89
표 3-10. 국내외 금시세 현황 ····· 90
표 3-11. 금괴 밀수 검거실적 ····· 91
표 3-12. 부동산중개인 수 ····· 94
표 3-13. 자금세탁 관련 건수 ····· 97
표 3-14. 자금세탁 사건 직접 관련 피의자의 전제범죄 유형 분류 ····· 98
표 3-15. 자금세탁 직접피의자의 직업 분류 ····· 98
표 3-16. 자금세탁 수법의 유형 분류 ····· 100

표 3-17. 전문직종사자 개인별 배경 분석 ····· 105
표 3-18.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 실행 정도: 변호사 ····· 106
표 3-19.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 실행 정도: 회계사 ····· 108
표 3-20.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 실행 정도: 부동산중개인 ····· 110

그림 차례

그림 3-1. 협의거래 보고기관: 변호사 ····· 107
그림 3-2. 협의거래 보고기관: 회계사 ····· 109
그림 3-3. 협의거래 보고기관: 부동산중개인 ····· 111
그림 3-4. 국내의 자금세탁 발생위험에 관한 시각 ····· 112
그림 3-5. 고객의 자금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 113
그림 3-6. FATF 권고사항의 국내 도입에 관한 시각 ····· 114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보트・요트 딜러의 사례 ····· 37
글상자 2-2. 협의거래 판단기준: 회계사 및 회계법인 ····· 60
글상자 2-3. 협의거래 판단기준: 카지노 ····· 61
글상자 2-4. 협의거래 판단기준: 부동산중개인 및 판매대리인 ····· 62
글상자 3-1. 해외사례: 변호사 ····· 72
글상자 3-2. 신○○그룹 외화도피 사건 ····· 77
글상자 3-3. (주)○○어스 회사자금 횡령 등 사건 수사결과 ····· 78
글상자 3-4.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사건 ····· 84
글상자 3-5. 청년사업가 '도박 덫'에 침몰 ····· 85
글상자 3-6. 컴퓨터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한 '짱구방' 조직 단속결과 ···· 86
글상자 3-7. 까르푸 관련 340억원 상당 스위스 밀반출 사건 ····· 87
글상자 3-8. 거액여행자수료(T/C) 등 외환해외밀반출사범 적발 ····· 92
글상자 3-9. 국제 코카인/에메랄드 밀수, 밀매조직 검거 ····· 92
글상자 3-10. 해외사례: 부동산중개인 ····· 9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는 1990년 FATF[1]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이에 전문직 및 비금융업[2]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FATF는 2003년 6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FATF 권고 2003」을 채택하였다.[3]

전문직종사자들은 금융 관련 자문과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는데 자금세탁자들은 이들의 지명도와 전문성을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킴으로써 자금세탁을 시도하고자 한다.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취약하며 자금세탁자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

1)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 프랑스 파리 OECD에 본부를 두고 있다. FATF는 1990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FATF 40개 권고사항을 제정하였음. 1996년에는 전제범죄의 범위를 마약자금뿐만 아니라, 중요범죄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2) FATF의 정의에 따르면 전문직은 법률전문직(변호사, 공증인과 기타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등을 말하며 비금융업은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을 의미한다.

3) 권고사항은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지원하는 국제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의 이행약속,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필리핀은 APG 2003년 연차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비협조국가 지정 이후 이행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총회개최권을 반납하였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도 FATF의 추가 대응조치를 우려하여 시급히 통과시켰다.

FATF는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현금거래를 행할 경우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4)]

9·11테러 이후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범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2003년 개정된 FATF 40 권고사항에 따라 각국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2001년부터 이미 회원국들에 권고해왔다. EU AML Directive[5)](2001. 12)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감사인, 외부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고가상품거래인(5천 유로 이상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보석, 귀금속, 예술품), 공증인, 기타 독립 법률전문직, 등의 사업과 직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EU AML Directive의 권고사항을 각국의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비금융업과 전문직에 대해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6)] 한편 2004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생명보험 중개업(intermediaries), 투자보험중개업 등을 포함시킨 법률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7)]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문제는 아직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4) 한편 변호사, 공증인 및 기타 법률전문직과 회계사가 획득한 정보가 직업상 비밀보장 또는 직업적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는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제16조)을 명시하고 있다.

5) EU 회원국들의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지침서

6) 2003년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7)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4년 3월 22일 3차 Money Laundering Directive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하였으며 이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등의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제도 정착과 혐의거래보고제도 개선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5년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아 자금세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금융업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전문직을 이용한 수법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직종사자들은 기업, 재단 등 각종 법인 설립을 통한 범죄수익의 유통과정에 관여될 수 있으며 고객을 대신해 현금입출금, 외환거래, 수표발행, 주식매매, 국제송금 등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또한 전문직종사자들은 범죄수익 또는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 자금세탁자들로부터 금융상 또는 조세상의 자문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자금세탁자들이 전문직종사자들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문직종사자들의 신용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따라서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세탁의 법률상 허점을 막을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반자금세탁조치를 통해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고 자금세탁자들로부터 이 직종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발전과 투명거래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과 정책방향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직종사자와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성 정도를 평가하고 비금융업 및 전문직이 연루된 국내의 자금세탁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이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 정도,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자금세탁의 법률상 허점을 막고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국의 제도 운영사례를 각 나라 금융정보기구의 자료조사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먼저 우리나라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판례와 수사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들이 자금세탁에 연루된 사례를 검토한다. 셋째,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국내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을 측정한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자료접근에 제약이 존재했다. 접근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자금세탁이 범죄화되지 않았던 1995 ~ 2000년간의 판례와 수사자료를 주 참고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판례에 기초한 국내사례 조사와 업종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현황의 판단자료로 삼았다.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4. 캐나다

본 장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국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미국에서 자금세탁관계 법령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1970년에 도입된「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이다. 은행비밀법이 도입되었을 당시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예금수취기관(depository institute)에 대해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였고 이후 개정 은행비밀법을 통하여 카지노 등 다른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였다. 주요 자금세탁 관계 법령으로는「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MLCA, 1986)」,「USA Patriot Act」(2001),「3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2002) 등이 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은 USA Patriot Act를 채택하여 은행비밀법에 새로운 조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은행비밀법은 금융기관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주의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비밀법에 정의된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상업은행, 미국내 외국계 은행지점 혹은 대리점, 저축금융기관(thrifts), 신용조합, 민간은행(private banks), 신탁회사, 투자회사, 증권브로커와 딜러, 선물중개회사(futures commission merchants), 보험회사, 여행사, 전당포업자, 귀금속상, 수표환전상(check cashiers), 카지노, 전신회사(telegraph company) 등[8]을 포함한다.

8) 31 USC 5312(a)(2), 5312(c)(1)(4) 참고.

USA Patriot Act 3장「자금세탁방지및반테러자금법」(2001)은 은행비밀법의 31 U.S.C. 5318[9]에 새로운 부절(subsection)을 추가하고 고객신원확인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Patriot Act에 의하여 미국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외국 코레스 계좌와 프라이빗 뱅킹 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하였다. 고객주의의무 위반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 코레스 계좌와 프라이빗 뱅킹 계좌에 대해서는 위반시 거래금액의 2배,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11]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 미국은 혐의거래보고의 기준, 절차, 면제, 기록보관, 비밀준수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심스러운"(suspicious 혹은 reason to suspect)에 대한 기준 및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12] 고객이 거래내용을 밝히지 않고, 총금액[13]이 2천 달러 이상인 의심스러운 거래의 경우 혐의거래보고(SAR)를 하도록 하고 있다.[14] 또한 모든 사업자(개인)는 자발적으로 혐의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관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는 혐의거래보고 내용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9) 31 U.S.C. 1051 et seq.는 공식적인 명칭은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이다.

10) Patriot Act에 의한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s: CIP)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계좌 개설 후 적절한 시간내에 취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신원을 증명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고객확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고객신원확인프로그램(CIP)은 고객의 신원을 증명하는 절차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의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Patriot Act section 326은 은행이 고객들에게 고객들의 신원을 증명할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11)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출입국할 때에도 현금밀수범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12) 재정경제부,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

13) aggregate funds or other asset.

14) 고객이 거래내용을 밝혔을 경우에는 5천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혐의거래보고를 한다.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혐의거래보고제도로 적발하지 못하는 자금세탁행위를 자료 분석을 통해 적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미국은 각 보고주체에 대해서 위험성을 분석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문직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와 카드클럽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과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 보석상(jewelers), 귀금속상,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보험회사, 투자상담사, 여행사, 자동차딜러, 보트딜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보트·자동차 딜러 등의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자발적인 혐의거래보고 의무 등에 비추어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각 보고주체(reporting entities)에 대해서 부문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FinCEN[15]은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혐의거래 판단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보고주체 스스로 일반적인 거래(ordinary cases)와 비교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고주체를 비금융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부문별 협회 등에 각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적절한 수준을

15)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로 미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

제출하도록 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있다.

2003년 2월 FinCEN이 발표한 혐의거래보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전문직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16]에서 보고한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17] [표 2-1]은 1996년 4월~2002년 10월 금융기관이 보고한 자금세탁 혐의자의 직업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인, 차용인, 브로커 순으로 혐의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다수이고 변호사와 회계사의 경우에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 자금세탁 혐의자와 금융기관의 관계

(단위: 건)

관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회계사	52	53	39	51	63	82	130
변호사	21	31	28	40	45	47	55
사정(감정)관	29	26	35	80	122	372	444
브로커	159	283	357	514	965	1,512	1,584
대리인	73	142	207	358	503	523	990
차용인 (borrower)	2,453	3,231	3,727	4,531	5,100	6,151	5,747
단체의 중역	160	88	122	130	154	190	177
고용인	5,588	8,438	8,385	8,632	10,851	11,693	9,364
사무직	495	548	492	519	565	694	604
기타	9,378	12,927	14,476	15,213	21,822	28,256	29,725
확인 불능	16,925	12,364	14,491	22,206	25,582	25,969	26,818

자료: FinCEN(2003. 2), "The SAR Activity Review - Trends Tips & Issues," Issue 5.

16) Federal Reserve Board, Federal Deopsit Insurance Corporation,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감독받지 않는 대리인(agent)을 말한다.

17) 1996년 1,402건, 1997년 3,529건, 1998년 5,209건, 1999년 9,663건, 2000년 1만 1,257건, 2001년 1만 5,492건, 2002년 1만 439건이다.

1) 변호사 및 회계사

미국은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재무부는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와 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자금세탁방지법(Title 18 of the U.S. Code, Sections 1956 and 1957)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변호사와 회계사가 범죄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거나 또는 자금이 범죄에 사용되어질 것을 알면서 범죄와 관련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또한 변호사와 회계사가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반드시 FinCEN 8300[18] 서식을 사용하여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거래의 불법 여부를 떠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그 거래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서식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최소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장기간 논의되어왔으나 입법화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계약상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혐의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입법 주체인 의회의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에도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회계사의 경우 독립적인 감사활동의 한 부분으로 각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회계사가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

18)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 확인, 실소유자 확인, 지불방법 및 형태, 수취자에게 설명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카지노와 카드클럽

카지노의 경우 현재 3개 주[19]에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는 아직 규제하고 있지 않다. 카지노와 카드클럽에 대해서는 연간 총수익(revenue)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라도 개인의 총거래금액이 5천 달러 이상일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하도록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20]

- 불법행위로부터 자금을 숨기거나 불법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 혐의거래보고와 은행비밀법에 요구되는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 해당 거래가 특별한 비즈니스, 법적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 정상적인 거래라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로 카지노가 그 거래의 목적, 배경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

3) 부동산중개인

미국에서 불법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으로 부동산 계약과정을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관광 및 휴양지 목적의 부동산에 불법자금을 투자하여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Patriot Act에 의하여 개정된 은행비밀법에서는 이미 부동산중개인과 그 외의 다른 연관사업에 대해서도 1만 달러 이상의 거래 혹은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19)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 뉴저지주의 애틀랜틱시티, 미시시피주에 있는 카지노.

20)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업에 대한 Patriot Act 규정의 시행 여부는 현재 FinCEN에서 검토 중에 있다. 만약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 강도 면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정부의 테러리스트 명단과 비교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협회에서는 규모가 작은 부동산업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은행에서 1차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경우 부동산 구입시 그 자금의 원천을 미국정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FinCEN은 부동산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의 경향과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이 보고한 혐의거래보고 내용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21] 부동산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2001년 1월~2002년 8월 20개월 동안 1,554건, 그리고 2002년 9월~2003년 3월 7개월 동안 1,224건이 보고되었다. 혐의거래 가운데 최고액은 1억 5천만 달러였으며 72건은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였다. 2002년 9월~2003년 3월 보고된 혐의거래 내용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혐의거래의 형태 및 보고건수: 부동산업

위반내용	보고건수	비율(%)
은행비밀법/분산거래*/자금세탁	888	67
기 타	105	7.9
주택담보 대출 사기	99	7.5

21) FinCEN(2003. 11. 6), “The SAR Activity Review - Trends Tips & Issues,” Issue 6.

표 2-2. 계속

위반내용	보고 건수	비 율(%)
수표 사기	58	4.4
융통어음 사기(check kiting)	54	4.1
문서 위조	36	2.7
상업대출 사기	27	2
위조수표	13	1

주: * 분산거래는 structuring을 의미함.
자료: FinCEN(2003. 11), "The SAR Activity Review - Trends Tips & Issues," Issue 6.

은행비밀법 위반, 분산거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에 부동산중개인이 연루된 사례는 67%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 사기, 수표 사기, 융통어음 사기 등에서 부동산중개인이 연루된 사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4) 귀금속상

귀금속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마약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벌어들인 불법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하여 빈번히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고액유통이 용이하고 휴대성이 좋은 귀금속 거래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더욱 선호하는 추세이며, 특히 다이아몬드 거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귀금속업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안이 2004년 11월 4일 확정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귀금속 소매상, 제조업자, 도매상, 세공업자로 이들은 6개월 이내에 내부절차, 직원교육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법률안에서 'dealer'의 정의는 이전연도 혹은 과세연도 동안 개인이 5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을 구입한 경우, 여러 번의 귀금속 거래를 합한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인 경우, 도매상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5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을 구입하여 소매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규정으로 귀금속 소매상이 딜러로부터 구입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5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을 컴퓨터, 드릴과 같은 최종재화를 만들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귀금속 딜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금속 딜러들은 은행비밀법(31 U.S.C 5311 et seq)과 Patriot Act 352(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길 경우 최고 25만 달러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 기타 직종

미국은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전문직종사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트 딜러, 전당포영업자 등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가) 자동차딜러

2002년 현재 자동차와 관련된 협의거래보고 건수는 1,765건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비밀법・분산거래・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 고객대출 사기(customer loan fraud), 수표 사기(check fraud) 순으로 나타난다.[22]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방법은 분산거래로 자동차딜러가 고액현금거래보고 수준보다 약간 못미치는 금액의 현금을 예금 또는 저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고객대출 사기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거짓, 날조한 진술을 하는 경우이

22) FinCEN(2003. 2), “The SAR Activity Review- Trends Tips & Issues,” Issue 5.

다. 이 자동차딜러와 소비자들은 거짓 금융정보,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 위조서명 등이 사용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한다. 수표 사기(check fraud)의 경우 주로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딜러에게 지급한 수표가 잔액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지급거절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나) 보트・요트 딜러[23)]

2003년 보트・요트 딜러와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총 61건이며, 은행비밀법・분산거래・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 고객대출 사기(customer loan fraud), 상업대출 사기 순으로 나타났다. 총 61건 중 1백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8건으로 조사되었다.

분산거래가 가장 흔히 나타나고 있으며 고액현금거래 기준인 1만 달러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입금 또는 출금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 보트/요트 딜러의 일상적인 거래와 달리 짧은 기간에 많은 거래가 있거나 심지어 보트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계절에도 거래가 빈번히 일어났다. 고객 대출 사기의 경우 보트를 사기 위하여 대부분 위조 또는 허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글상자 2-1. 보트・요트 딜러의 사례

- 보트딜러 A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25만 달러를 입금하였다. 매번 5천~9천 달러의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1만 달러 이상 입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 고객 B는 2001년 고액의 보트를 일시불로 결재하였으며 같은 해 2달 동안 한 중동아시아 국가로부터 그에게 268만 5천 달러가 송금되었다.
- 요트 브로커 C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 고객이 2,850만 달러 상당의 요트를 구입하기 원했다.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그 고객의 행동이 매우 수상하였다.

23) FinCEN(2003. 2), “The SAR Activity Review- Trends Tips & Issues,” Issue 5.

다) 전당포 영업자

2002년 전당포영업자와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272건이었으며 총 326건[24]의 위반행위를 발견하였다. 52.15%가 은행비밀법・분산거래・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사례였으며, 기타(8.28%), 신용카드 사기(7.97%), 수표의 융통어음화[25](7.36%)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이 31.62%로 가장 많았으며 1백만 달러 이상도 3.31%나 있었다.

혐의거래보고의 가장 흔한 경우는 분산거래로 많은 전당포영업자가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을 입출금하였다. 또한 다수의 전당포영업자들이 일반적인 전당포 거래규모에 맞지 않는 큰 금액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당포영업자들이 고객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알리자 현금을 그 기준 아래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경우와 그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었다. 훔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와 수표에 의한 거래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 특징 및 시사점

미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특징은 첫째,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직종에 대해 각 직종별・서비스별로 고객, 거래관계, 거래유형 등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험수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은 각 직종의 위험정도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과도하거나 미흡한 의

24) 한 건의 혐의거래보고에 여러 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

25) 수표의 융통어음화(check kiting)는 대금입금이 되지 않는 계좌로부터 자금이 인출되어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무 부과로 인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의 동의도 비교적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각 직종별로 2～3년마다 위험성 정도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무의 적용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은 의무 부과 대상의 자율적 참여와 자발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위험도 분석에 따라 각 직종별로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직종협의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보고주체들이 스스로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보고주체들의 판단과 직업상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의 하나로서 국제자본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세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NCIS(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재무부(HM Treasury), JMLSG(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 등이 있다. 자금세탁 관련 업무는 NCIS내 경제범죄기구(Economic Crime Unit: ECU)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JMLSG[26]는 해외의 자금세탁방지 노력 사례와 해

26)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Friendly Society(AFS), Association of Indipendent Financial Advisers(AIFA), 영국은행협회(BBA), 개인고객투자 매니저 및 주식브로커 협회(APCIMS), 영국벤처케피탈협회(BVCA), Council of Morgage Lenders(CML), 전자화폐협회(EMA), Finance and Leasing Association(FLA), 외국은행 및 증권 협회(FBSA), 선물 옵션 협회(FOA), 투자관리협회(IMA), 런던투자은행협회(LIBA), PEP & ISA Manager Association (PIMA), 도매시장브로커협회(WMBA) 등이 멤버이다.

당 법규를 해석하고 해당 기관 및 일반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1990년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CJA, 1993)」과 「자금세탁에 관한 규칙(Money Laundering Regulations, 1993)」에 반영되어 있다. 2003년 개정된 「자금세탁에관한규칙」과 「Proceeds of Crime Act 2002」에서는 EU AML Directive(2001. 12)의 권고를 반영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파산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 신탁 또는 회사서비스제공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POCA), The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3, Industry and professional guidance, FSA Rules/supervision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0월 발표된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와 JMLSG 가이드라인[27]은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은 FATF 40개 권고사항, FATF 테러자금조달 차단 8개 특별권고, EC의 자금세탁방지 권고(EC Directives) 등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모든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 형법(criminal law)으로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JMLSG와 같은 협회의 가이드라인도 수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어 사실상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JMLSG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은행,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 투자업종사자와 기업, 보험회사, 환전상, 수표환전소(cheque encashment centers), 자금이체서비스업(money transmission services) 등이다.

영국은 일정액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27) JMLSG 가이드라인은 협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이의 준수 여부가 수사상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법령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28] 따라서 직종별로 각기 다른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위험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에 의하여 위험성 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된다.

영국과 같이 위험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각 직종별로 위험성 정도를 2~3년마다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은 일정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직종별, 서비스별로 항상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기반접근법으로는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가 NCIS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책임면책권을 법으로 따로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29]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영국은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감사인(auditors), 세무사(tax advisors)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회사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 고객의 증권, 현금, 자산 등을 관리하는 경우

---

28)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혐의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NCI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한다.

29) 일반사업자나 개인이 전문직종사자에게 조언을 구한 경우 비교적 그 정보의 유출경위를 알기 쉽고 그 소송의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문직종사자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문직종사자는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는 법에 규정된 의무라는 논리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 은행, 증권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회사의 설립·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 신탁, 회사, 혹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비금융업인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귀금속상[30], 골동품 딜러, 경매업자, 자동차 딜러 등에 대해서는 1만 5천 유로(약 1만 700파운드)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는 고객의 신분 확인, 현금 수령 전 관세 및 물품세(Customs & Excise) 양식과 함께 등록, 혐의거래 발견시 NCIS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소매상, 레스토랑, 게임 관련 사업, 운송회사, 스포츠클럽, 환전상, 자선단체 및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고액현금을 다루는 경우 혐의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모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03년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의한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총건수에 비해 아직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의한 혐의거래 건수는 2002년에 비해 25% 증가하였다.[31]

1) 변호사 및 회계사

영국 변호사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노력은 1988년부터 추진되어왔으며 현재는 법률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는 First European Money Laundering Directive의 권고로 Criminal Justice Act 1988(1993년 개정), Drug Trafficking Act 1994, Terrorism Act 2000(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로 개정)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2000년 6월 변호사협회(Law Society)는 모든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Golden

30) Jewellers를 의미한다.

31) NCIS(2003), "UK Threat Assessment- The threat from serious organised crime."

Rule을 따르도록 하였다.

- 관계법령 숙지
- 자금세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숙지
- 거래고객에 대하여 바로 알기
-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바로 알기
- 직원들에 대해서 바로 알기
- 직원들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2004년 3월 1일부터는 2003년 개정된 「자금세탁에관한규칙」과 「Proceeds of Crime Act 2002」에서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분야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변호사, 회계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업, 비금융업, 전문직종사자의 자문(advice), 감사(audit), 조정과정(arrangement)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32] 또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불법자금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거래를 7일간 중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은 변호사, 회계사 수에 비해서 혐의거래보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2) 카지노

카지노에 대해서는 1만 5천 유로(약 1만 700파운드)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는 고객확인절차를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금수령 전에 관세 및 물품세(Customs & Excise) 양식과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혐의거래 발견시 NCIS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2) FATF 권고사항 12조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언(advice)에 대해서도 고객주의의무와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의 고객확인은 이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카지노 입구에서 서류를 작성케 하는 안[33]과 카지노 시설에 입장하는 고객에게만 작성하게 하는 안[34] 등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현재 제1안을 채택하고 있다.[35]

3) 부동산중개인

영국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자금세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여타 금융기관 및 전문직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부동산중개인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다. 즉 실제 거래의 감독은 변호사, 은행, 주택담보대출업체(mortgage lender)들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부동산중개인은 자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객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따로 비용을 들여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고객들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크거나 기업화된 부동산중개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33) 이 방안은 게임을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34) 이 방안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의 구별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5) A person who operates a casino by way of business in the United Kingdom must obtain satisfactory evidence of identity of any person before allowing that person to use the casino's gaming facilities.

4) 고가상품딜러

귀금속상 등 고가의 상품을 다루는 곳에서는 1만 5천 유로 이상의 거래시 고객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직종협회의 발언권이 약하여 협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방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British Art Market Federation은 입회 및 탈퇴가 자발적인 기구로 고가상품딜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많은 고가상품딜러의 경우 어떠한 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마권영업자(bookmakers)

마권영업자는 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의하여 혐의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Regulation)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정부는 Budd Report[36]의 권고를 받아들여 게임 또는 도박 산업 전체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Gambling Commission의 설립도 검토 중에 있다.

다. 특징 및 시사점

영국은 EU AML Directive(2001. 12)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하였으며 그 범위도 현재 전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전문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매상, 레스토랑, 게임 관련 사업, 운송회사, 스포츠클럽, 환전상, 자선단체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협의거래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국 영국의 자금세

36) 영국 게임산업에 관한 제안서로 Alan Budd(chief Treasury adviser)이 2001년 6월에 제안하였다.

탁방지제도는 매우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일정액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직종별로 2 ~ 3년마다 위험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는 자금세탁이 일정한 형태를 띠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직종별, 서비스별로 항상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곳을 찾아 나타나기 때문에 전 대상 직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사업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은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호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금세탁 관계 법령을 만들어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03년 12월에는 테러자금 방지를 포함한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승인하였다. 자금세탁 관계 법령으로는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1987)과 금융거래보고법(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FTR Act 1988)이 있으며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규정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금융거래보고법(FTR Act)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금융기업을 포함하여 현금딜러(cash dealers)[37], solicitors,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37) 현금딜러에는 은행, 주택협회(Building Societies), 신용조합, 금융회사(Financial Corporations), 보험회사, 금융중개자(Intermediaries), 증권딜러, 선물 브로커, Cash Carriers, 신탁업자

(significant cash transactions report: SCTR), 고액도박거래보고(significant betting transactions report: SBTR), 국제현금반출입보고[38](international currency transfer report: ICTR), 국제자금이체정보[39](international fund transfer instruction: IFTIs), 혐의거래보고(suspect transaction report: SUSTR)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거래보호법의 현금딜러는 고객의 계좌정보[40], 혐의거래, 고액현금거래, 국제자금이체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고객확인절차로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현금딜러에게 각종 신분증명 출처를 제시하고 현금딜러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좌 개설 또는 운영시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위조서류 이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있다.

혐의거래보고는 현금딜러가 거래의 상대방 또는 거래협상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혹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41]

(Managers and Trustees of Unit Trusts), 금·은괴 딜러(bullion dealers), 카지노, Gambling Houses, 국영 스포츠 도박협회(Totalisation Agency Boards: TABs), 경마 마권업자(On-Course Totes and Boomakers), 송금업자, 환전상(Bereau de Change operations), 여행사 등이 있다.

38) 자금을 1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시 일반인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9) 자금을 1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시 cash dealer는 1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AUSTRAC에 보고하여야 한다.

40) 이름, 계좌번호, 현주소, 신탁계좌의 경우 실소유자 및 신탁회사의 정보, 그 외에도 회사 등록증과 같이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41) 혐의거래보고 기준
-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법적 사업거래와 불일치한 거래
- 통상적 금융거래 도중에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거래
- 이례적으로 연결된 거래
- 통상적 금융거래 도중에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중재기관 이용
- 이례적인 결제수단

AUSTRAC[42]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중 총 6천만 건의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 중 혐의거래 보고가 8만 2천 건,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1,250만 건 이루어졌다.

표 2-3. AUSTRAC에 대한 보고 현황(2002년)

보고 형식	합 계	일일 평균
고액현금거래보고	12,551,171	13,040
국제자금이체정보보고	47,142,481	28,079
혐의거래보고	82,378	74
국제현금반출입보고	237,169	83
합 계	60,013,199	41,273

자료: 금융정보분석원(2003. 11. 27),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변호사는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43] 법정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사무만을 취급하는 법률가인 사무변호사(solicitor)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44] 회계사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 투자상품을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상환할 경우
- 분명한 상업적 또는 기타 목적 없이 신탁 및 회사 설립할 경우
- 트러스트 펀드 또는 회사가 설명되지 않는 출처의 자금을 수령할 경우
-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고 즉시 외부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 회사계좌 개설을 오래 지연할 경우
- 상업적 또는 기타 분명한 목적 없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42) The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로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전담기구이다.

43) State and Territory 수준에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44) 금융거래보고법(FTR Act)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다.

ICAA, CPA Australia와 같은 소속된 협회의 절차 및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있다.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45]은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법률서비스업자(Legal Practitioners)로 분류되어 고객주의의무(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와 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46]

카지노는 도박장(gambling house), 국영스포츠 도박장(Totalisator)[47] 등과 함께 금융거래보호법(FTR Act)의 현금딜러에 속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는 고객주의의무와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8]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확인 및 보증체계를 강화하며 기록보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예정이다.[49]

귀금속상은 금융거래보호법의 현금 딜러로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1) 변호사·회계사·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호주에는 약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의 변호사와 사무변호사(solicitor)가 활동하고 있다. 가장 큰 9개의 로펌은 각각 100명에서 200명의 변호사와 파트너십을 맺

45) 아직 특정 산업 부문(specific industry sector)에 대한 신탁 및 회사서비스제공인의 정의(identify), 관리·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46) Attorney-General's Department에서 발간된 *Issue Paper*(2004)는 변호사·회계사·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을 "Legal Practitioners"로 함께 분류하고 있다.

47) 국영 도박장으로서 모든 스포츠에 관한 내기와 도박을 하는 곳임. 예로 들면 Footy TAB에서는 축구경기에 내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TAB Sportsbet에서는 크리켓, 골프, 자동차 경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스포츠에 내기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48) State and Territory 수준에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49) Proceeds of Crime Act 2002

고 있으며 이 9개 로펌에 모두 1천 명 이상의 변호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50] 변호사들은 그들이 파트너십을 맺은 로펌과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만 하며, 일반적으로 단지 사무변호사들로부터 사건을 수임받고 있다.

변호사・회계사・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에 대해서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거래시 공신력 있는 문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기준금액 이상의 거래이거나, 대체송금에 관한 거래인 경우 그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검증하는 한편, 그 고객이 대리인인 경우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수반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을 조달한 의혹이 있을 때, 기존 고객확인 정보의 진실성에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는 거래 내용 및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단 고객과의 거래가 확정되면 고객이 혐의거래행위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전문법률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변호사는 고액현금거래에 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

2) 카지노

호주에는 현재 13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인터넷 카지노는 현재 법(national gambling legislation)으로 금지되어 있다.[51] 카지노 사업은 2003년을 기준으로 총

50) FATF(2005. 10. 14), "Third Mutual Evaluation Report on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51) Alice Spring主의 Lassiters 인터넷 카지노는 법(national gambling legislation)이 시행되기

GDP 가운데 59억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86억 달러의 산업판매(industry sale)를 발생시키고 있다.[52]

카지노의 등록·감독은 각 주(State and Territory)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거래보호법(FTR Act)에 의하여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금융거래보호법(FTR Act 1988)은 자금세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기타 비즈니스 활동에 도박업계를 포함하고 있다. FTR Act는 호주의 모든 도박업소, 카지노, 마권업자, 경마의 장외매장베팅서비스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2003년에 발표된 FATF 40개 수정권고에 따라 도박업계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 보고의무, 기록보존의무 등을 준수하고 있다.

카지노, 도박장(gambling houses), 마권영업자, 국영스포츠 도박장(totalisator) 등은 계좌를 신설할 때 고객신원을 확인, 검증해야 한다. 고객주의의무는 자금세탁 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객의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무는 모든 고객이 기준금액 5천 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된다.

카지노 등 모든 도박업소, 마권업자, 경마 장외매장베팅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혐의거래보고의무와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진다. 혐의거래보고 기준은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어떠한 행위(any activity)'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만 달러 이상 고액의 도박거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일정 기준금액 조건에 따라 호주의 도박업계는 해당 고객들의 신원확인절차를 마련하고, 특정기간 동안 규제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거래정보 및 고객신원 기록보존

전에 설립되어 호주에서 인터넷 카지노가 인정된 유일한 곳이다.

52) FATF(2005. 10. 14), "Third Mutual Evaluation Report on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부동산중개인

호주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은 약 1만 개가 있으며 종사인원은 7만 7천 명에 달한다. 2003년 6월 말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6만 8천 명의 종사인원 가운데 53%가 부동산 가맹점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2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4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다.[53]

호주의 부동산업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관련 기관과 성공적으로 협력해 왔다. 부동산중개인은 신원확인[54]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감독기관의 요청시 고객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객신원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의 금융범죄 위험성이 낮은 경우,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이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경우, 감독체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보다 간소하거나 완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인은 추가적인 고객기록 수집과 보존의 의무를 가지며, 고객기록에는 계약정보와 사업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의 FTR Act는 기록보존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Proceeds of Crime Act 2002의 기록보존조항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호주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규제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중개인들은 높은 유연성을 가

53) FATF(2005. 10. 14), "Third Mutual Evaluation Report on Anti- 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54) 실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는 동시에 정부는 자금세탁행위를 추적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대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절차를 효과적이며 활용이 간편하도록 유지할 수 있다.

표 2-4. 파트너십 규제 모델*

부동산업체	파트너산업대표 (Partner Industry Representatives)	AML 규제기관
- 혐의보고시스템 실행 - 내부 AML 절차 및 가이드라인 구축 - AML 간부 트레이닝 실시 - 고객신원 검증 -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 절차 - 고객정보 검토 - 자금세탁의 추세와 유형에 맞추어 정보 제공 - 혐의거래고객 파악 - 혐의거래보고 조치	- 부동산업체에 부여할 AML 산업코드 개발 - 내부 AML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실행에 관한 회원수칙 안내 - 불이행 사안에 대한 감독과 규제자에게 보고 이행	- AML코드/체계 이행 여부 감독 - 가이드라인과 코드 제공 - AML / CFT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거래보고내용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 혐의거래보고 검토 및 법집행기관의 조사내용 참고 - 거래보고자료 분석을 통한 금융정보 가공 -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성의 동향 및 유형에 대해 부동산업계에 피드백 제공

주: * 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모델은 타 산업의 규제모델 내용과 유사함.
자료: Australian Attorney-General's Department(2003), "Issue Paper - Anti-Money Laundering Reform."

4) 귀금속상

귀금속상은 고객정보, 거래행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의무가 있다. 금・은괴 판매상(bullion sellers)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약관계를 맺을 때 고객신원을 조회한 후 발견되는 혐의에 대해 보고할 의무와 고객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의무도 있다. 또한 금・은괴 판매상은 1만 달러 이상 거래시 고액현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귀금속상은 고객정보를 기록・보존할 의무를 지니며, 고객기록에는 계약정보와 사업관계가 포함된다. 향후 기록보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금・은괴 판매상(bullion sellers)을 포함한 귀금속상은 고객주의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하지만,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의 금융범죄 위험이 낮은 경우,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이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경우, 감독체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보다 간소하거나 완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혐의거래보고는 보고주체인 귀금속상이 거래행위의 혐의를 확신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이루어지며, 이때 보고주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55] 혐의거래보고 기준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세탁업자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능공과 소상인들은 혐의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특징 및 시사점

호주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이나 각 주(State and Territory)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어 FATF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이외에도 고액도박거래보고, 국제현금반출입보고, 국제자금이체정보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호주는 위험분석모델을 채택하여 해당 업종의 위험분석에 기초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파트너십 규제모델을 제시하여 해

55) FATF 40 권고사항(2003)에 따르면 귀금속상은 일정 기준금액 1만 5천 달러(약 2만 호주달러) 이상의 거래액수에 한하여 혐의보고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 업계와 업종협회, 규제기관간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산업내 각기 다른 업종의 업자에 대해 위험 정도에 따라 의무이행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의무수행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4. 캐나다

캐나다는 금융부문이 발달되어 있고 방대한 국경간 현금 및 화폐수단의 이동이 용이하여 자금세탁범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정부는 연간 대략 50억~170억 달러의 범죄수익이 세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간의 국경 부근 환전소(currency exchange houses)에서 대규모 마약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6]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캐나다는 2000년 FINTRAC[57]을 출범시킨 이후 빠른 속도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오고 있다.[58]

2004년 1월부터 보고주체들에 대한 검사·감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100여 개 사업장[59]에 대해 방문검사를 실시, 744개 사업장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하는

56) 미국 마약단속국(The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부동산중개인과 귀금속상이 불법 마약 수입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7) Financial Transactions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58) FINTRAC은 2001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현재 총 183명이 오타와 본사를 포함하여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59) Money Services Business에 한정되어 있다.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온라인 보고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거의 모든 보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 ~ 2004년도에는 950만 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는 2002 ~ 2003년도의 200만 건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수치이다.

캐나다의 자금세탁 관련 법령은 1991년 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ct가 제정됨으로써 도입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PCMLTFA)가 통과되어 포괄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보고대상은 은행, 신용조합, 보험회사, 증권딜러, 환전상, Money Services Business(MSB), 신탁회사, 카지노, 회계사 및 회계법인, 부동산중개인 등이 포함된다.[60] 이 보고주체들은 고객확인, 기록보관, 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보고, 그 외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감사절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61]

현재 FINTRAC은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이는 FINTRAC의 우수한 분석력, 기술인프라, 국내외 협력관계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신원확인은 일반적으로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카지노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현재 카지노 업주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과 3천 캐나다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고객과 관련된 기록을 작성할 경우 고액현금거래 기록, 예금전표, 서명카드, 지급전표 및 크레디트 메모 등 관

60) 2004년 파악된 총보고주체 수는 28만 8천 개이다.

61)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거래보고 위반 시 최고 2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시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형, 기록보존의무 위반시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련 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기록시 개인이 제3자를 대리하여 거래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혐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확보되거나 또는 그럴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혐의거래보고서를 FINTRAC에 제출해야 하며 혐의거래보고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62]

혐의거래는 의심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FINTRAC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자 혹은 보고자의 고용주는 일단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한다.[63] 혐의거래보고시 보고주체 스스로 일반적인 거래(ordinary cases)와 비교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threshold)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판단기준은 하나의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몇 번의 거래를 통해 나누어 지급받은 금액이 총 1만 달러 이상인 경우이다. 몇 번에 걸쳐 거래되었을 경우 24시간내에 동일 고객 및 법인에 의해 직접 혹은 대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에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한다.

---

62) 혐의거래보고로 인하여 전문직이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민법(civil law)으로 보호하고 있다.

63) 혐의거래보고의 방법은 전자보고와 지면보고 두 가지 종류가 있으나 FINTRAC은 전자보고의 방법을 권장하며, FINTRAC 웹페이지에 보고자의 세부목적에 맞춘 보고서 양식을 종류별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다. 혐의거래보고서 양식에 혐의거래의 근거로 사료되는 내용들을 기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FINTRAC은 보고자에게 보고서 수신 확인메일을 자동발송하고 아이디를 부여한다. FINTRAC은 제출된 혐의거래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요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보고자에게 알려 추후 수정이 가능하게 한다. 보고자는 FINTRAC으로부터 수정요청을 받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여 30일의 보고기한내에 재보고해야 한다. 즉 모든 정보는 혐의거래가 처음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FINTRAC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보고자가 FINTRAC에 혐의거래보고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혐의거래의무 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FATF 40 권고사항(2003)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즉 상담을 시작하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기 이전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시 혐의거래보고 실행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거래 후 15일내에 FINTRAC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보고자이거나 보고자 혹은 보고실체의 피고용인인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해 피고용인으로서 본인이 수행한 모든 활동에 대해 고용인이 보고의무를 지게 된다.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캐나다는 현재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및 판매대리인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64]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협회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FINTRAC은 변호사에 대해서 이른 시일내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해집단의 반대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65]

카지노는 주로 정부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카지노에는 다른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회계사 · 회계법인

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자금의 수취와 지급, 주식, 부동산, 혹은 사업자산 및 기업체의 매수 · 매도, 어떤 형태로든 자금 혹은 주식을 전환하는 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직 · 간접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66] 또한 회계사는 각 소속

64) 이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이행상황 담당자 고용, 이행정책 및 프로세스의 개발과 활용, 정책 및 프로세스의 효율성의 정기적 검토, 지속적 이행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

65) 고객으로부터 7,500달러 이상의 현금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개인이나 업체 대리인의 경우 그를 고용한 개인이나 업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보고의무, 기록보존의무, 제3자 대리거래확인(Third-party determination)의무이다. 보고의무는 혐의거래보고, 테러자금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로 분류된다. 혐의거래보고는 어떤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테러활동 지원의 혐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테러자금보고는 테러용도의 자금이 존재할 때, 테러리스트 혹은 그 단체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소유 또는 관리되고 있는 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보고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2003년 1월부터 1만 달러 이상 현금거래시 보고한다.

기록보존의무는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현금거래를 맺는 모든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보존의무 이행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고액현금거래 기록, 고액현금지출 기록, 서명카드, 예금전표, 회사 공문서 사본, 예금주 신원정보, 신용공여 관련 정보, 외환거래표(foreign exchange ticket), 계좌운용협약, 부채 및 신용에 관한 정보(debit and credit memos) 등이 있다. 제3자 대리거래 확인의 경우 고액현금거래 기록시 개인이 제3자를 대리하여 거래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에 제3자가 관여된 경우라면, 제3자의 신원과 제3자와 대리자간의 관계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66) CICA(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안내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감사, 사후 감사, 문서작성 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글상자 2-2. 혐의거래 판단기준: 회계사 및 회계법인

- 고객의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가 월등히 많은 경우
- 고객의 사업활동이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 및 재무비율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
- 고객이 자사의 매출액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의 수표를 거래하는 경우(예: 미확인 출처로부터의 이례적인 수금)
- 고객이 회계인력(bookkeepers)이나 회계사를 매년 교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이미 상환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회사의 경우
- 해당 업계에서 흔하지 않은 경우로 회사가 직원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을 때
- 회사가 역외회사에 일반적이지 않은 자문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파산수준에 이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주주의 부채규모 등이 회사의 실제 경영활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회사 장부를 통해 손쉽게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사업행위에 대한 허위진술을 알아내기 위한 원장 조사
- 회사가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이고 있는 계열사 혹은 기타 유사 지배를 받는 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동종업계의 일반적 관례를 벗어나 회사가 막대한 금액의 개인 또는 고객자산[67]을 획득한 경우
- 자금세탁방지법을 채택하지 않는 나라, 고객의 자산을 숨겨주는 은행, 조세회피지역(tax heaven)으로 알려진 나라에 위치한 조직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회사인 경우

2) 카지노

카지노의 범주에는 계속적인 카지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모두 포함되며 이들은 보고의무, 기록보존의무, 제3자 대리거래확인(Third-party determination)의무를 지닌다.[68] 보고의무와 기록보존의무는 회계사의 경우와 동일

67) Personal and consumer assets는 보트, 명품 자동차, 개인 주거지, 별장 등이다.

68) 이행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카지노 업주 중 룰렛이나 카드게임 또는 슬롯머신의 실소유자 등이며 video lottery terminal은 제외됨.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선의 목적으로 카지노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

하다.

고객신원확인은 고액현금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 현재 카지노 업주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개인 혹은 법인, 3천 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제3자 대리거래확인시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고액현금거래 기록시, 개인이 제3자를 대리하여 거래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객이 서명카드(signature card)를 개설할 때와 계좌운용협약(account operating agreement)을 맺을 때 올바른 절차를 수행하여 반드시 그가 제3자를 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만약 거래에 제3자가 관여된 경우라면, 제3자의 신원과 제3자와 대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글상자 2-3. 혐의거래 판단기준: 카지노

- 고객이 제3자로부터 유통되었거나 수취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카지노 수표로 3천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 고객이 제3자의 명의로 상금수표(winnings cheque)를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이 분산거래를 통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고객이 상금을 위한 것이 아닌 수표를 요청하는 경우
- 카지노를 정기적 혹은 자주 방문한다거나 고액거래를 하는 고객이 아니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장소로 상금을 전환(transfer the funds)시킬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카지노 측에 고객이 문의를 하는 경우
- 고객이 현금으로 대량의 칩을 구입하여 허위로 큰 게임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특정 카지노 게임에 한정적으로 집중하여 참여한 후, 카지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 고객이 소액권을 고액권, 칩(chip) 구입을 위한 전표 또는 수표 등으로 교환하는 경우
- 고객이 여러 개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 제3자의 은행계좌, 마약판매국의 은행계좌 혹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상금의 전환을 요구하는 고객의 경우

거래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혐의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확보되면 혐의거래보고서를 FINTRAC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보고자 혹은 보고자의 고용주는 일단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며 만약 거래기간 중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보고기한은 거래시점에 맞추어 계산한다.

3) 부동산중개인 및 판매대리인

부동산중개인 및 판매대리인은 자금을 받거나 지급할 때, 자금을 위탁하거나 인출할 때,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전환할 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인 및 판매대리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보고의무, 기록보존의무, 제3자 대리거래확인의무이다.

보고의무와 기록보존의무는 회계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다. 제3자 대리거래확인의 경우에도 고액현금거래 기록시 개인이 제3자를 대리하여 거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거래에 제3자가 관여된 경우라면 제3자의 신원과 제3자와 대리자간의 관계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글상자 2-4. 혐의거래 판단기준: 부동산중개인 및 판매대리인

- 고객이 부동산 매매 마감시간에 맞추어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가져온 경우
- 고객이 공동명의나 친척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 고객이 부동산 구매에 대한 관련 서류에 본인 명의를 기재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각종 서류에 타인 명의를 적어 넣는 경우
- 고객이 부동산 구입시 거래했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주저하거나 그 설명이 모호한 경우
- 고객이 시장가격이나 최초 호가 이상의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서류상에 보다

[글상자 2-4 계속]

적은 액수를 기록하고 불법적으로 뒷돈 거래를 하는 경우
- 고객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고 불법적인 뒷돈 거래로 수익을 챙기는 경우
- 고객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
- 평소 고객이 보여주던 비즈니스 관행과 달리 법인 또는 회사이름으로 사유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고객이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고객이 단기간 내에 복수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구입한 부동산들의 위치, 환경, 추후 보수비용 등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우
-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사용하기 전에 임대료(rent)나 차용증서(the amount of a lease)를 지급한 경우
- 고객이 부동산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해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 혹은 리모델링 송장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우

다. 특징 및 시사점

캐나다의 자금세탁방지체계는 2000년 FINTRAC을 출범시킨 이후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2 ~ 2003년도의 200만 건에서 2003 ~ 2004년도에는 950만 건으로 보고건수가 늘었으며 거의 모든 보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홍보와 외국 FIU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 11월 PCMLTFA 법령을 제정하고 2002년에 들어서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는데 자금세탁 관계 법령 제정시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등을 보고대상에 이미 포함함으로써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제3자 대리거래확인의무를 통해 실소유주를 확

인하게 함으로써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귀금속상, 자동차딜러, 보트딜러,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자 등 그 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69] 호주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용받고 있는 전문직과 아직 미부과된 전문직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자금세탁 위험성 분석을 마치고 각 협회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70]

69)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귀금속상에 대한 등록을 실시할 경우 수많은 이름, 주소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기능이 FINTRAC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딜러의 경우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거래하는 사람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FATF 권고사항에 있는 "engage in"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와 연결된다.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워 아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70) 현재 변호사, 세무사에게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세무사의 경우 회계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액수가 적은(주로 2,500달러 이하) 계약금만 처리하며 액수가 큰 잔금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에서 빠져 있다.

표 2-5. 주요국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현황

<table>
<tr><th></th><th>미 국</th><th>영 국</th><th>호 주</th><th>캐나다</th></tr>
<tr><td>카지노</td><td>· 총수익이 100만 달러 이상 혐의거래 보고
· 총 거래금액 5,000달러 이상 보고</td><td>· 1만 5천 유로(1만 700파운드) 이상 거래시 고객주의의무</td><td>· 카지노는 금융거래보호법(FTR Act)의 cash dealers에 해당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용받고 있음.
· 1만 달러 이상 거래시 보고</td><td>·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보고
· 혐의거래시 30일 이내
· 영업하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에 해당함.</td></tr>
<tr><td>변호사</td><td rowspan="2">·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적용. 계약서상 고객정보의 비밀유지를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에 어려움
· 1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받으면 15일 이내 보고토록 하고 있음(위반시 최소 2만 5천 달러)
·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 회계사는 각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증명함으로써 금융거래보고를 대체하고 있음.</td><td rowspan="2">·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자금세탁에 관한 규칙과 Proceeds of Crime Act 2002에 의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분야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음.</td><td rowspan="2">· 변호사 · 회계사 ·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은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시 보고함.

·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무변호사, 법무법인, 합동사무사는 고액현금거래만 보고</td><td>·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적용</td></tr>
<tr><td>회계사</td><td>·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보고
·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는 ①자금을 받거나 지급한 경우, ②주식, 부동산, 자산 등 매매, ③어떤 형태건 자금 또는 주식을 전환하는 경우
· 감사, 편집활동 등은 제외</td></tr>
<tr><td>부동산 중개인</td><td>· 1만 달러 이상의 거래 또는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
·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음.</td><td>· 자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객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함. 법률로 규제 불필요
· 기업화된 중개소의 경우 연구를 진행,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td><td>·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확인 및 보증체계를 강화
· 기록보존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조정 예정(Proceeds of Crime Act 2002)</td><td>·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보고
·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는 ①자금을 받거나 지급, ②자금을 위탁하거나 인출, ③어떤 형태든 자금을 전환하는 경우</td></tr>
</table>

표 2-5. 계속

	미 국	영 국	호 주	캐나다
귀금속상	· 2004년 11월 4일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임. · 딜러의 정의는 ①개인이 5만 달러 이상 구입, ②총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상, ③도매상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5만 달러 이상 구입하여 소매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 · 위반시 25만 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1만 5천 유로(약 1만 700파운드) 이상 거래시 ①신원확인, ②관세 및 물품세 양식과 함께 등록, ③혐의거래신고 · 협회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을 갖지 못함.	· 귀금속상은 금융거래보호법(FTR Act)의 cash dealers에 해당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용받고 있음. · 혐의거래보고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기능공 및 소상인들은 혐의거래보고대상에서 제외 · 1만 달러 이상 거래시 보고	·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적용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적용.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임.	· 일정액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법을 적용	·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시 보고함.	· 어떤 업종을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연구 검토 중
기 타	· 자동차딜러, 보트·요트딜러, 전당포 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중에 있음.	· 마권영업자는 혐의거래보고는 하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법은 미적용	· 경주마권업체, 국영스포츠 도박장, 도박장(gambling house), 여행사 등도 금융거래보호법의 현금딜러에 해당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용받고 있음.	· 2005년 3월 31일까지 자금세탁방지 대상업종으로 신용조합, 서민금고(caisses populaires)를 선정할 예정임.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우리나라는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71]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해서는 따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등에 대한 업무 현황, 자금세탁에 대한 취약성, 연루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판례조사를 통해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사례를 검토한다.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서베이를 통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부과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위와 일반인들의 신임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도와 전문성은 자금세탁자들이 방패로 이용하는 중요 수단이다. 카지노, 귀금속, 부동산은 자금세탁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자금세탁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1) 변호사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에서부터 자문 제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

71)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입법으로 200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법률 제6516호)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6517호)을 제정하여 자금세탁행위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1995년 이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마약범죄와 관련한 불법수익의 은닉 및 가장행위를 형사처벌하였으나 자금세탁범죄를 마약거래로만 한정시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은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의 발본색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역의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경영, 기술개발, 투자전략 등 모든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소송대리, 상담 및 자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분쟁 해결 등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업무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2005년 1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6,892명으로 이 중 개인회원으로 분류되는 개업 중인 변호사는 6,300명이며 준회원으로 분류되는 휴업 중인 변호사는 592명이다. 법률사무소[72]의 한 형태인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출자한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월급을 받는 변호사는 '소속변'으로 구분된다.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관한 행위'란 형사소송에서 검사를 상대로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의뢰자의 대리인으로 변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란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행정심판

72) 법률사무소는 우선 변호사 1명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가, 또는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가의 기준에 따라 분류
①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1명이 개업하여 운영
② 비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공증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단지 변호사 여러 명이 모여 합동으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③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3명 또는 5명 이상이 모여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법무부로부터 공증업무에 대한 인가를 얻어 법률사무소 고유의 업무와 함께 공증업무까지 하는 법률사무소
④ 법무법인: 변호사 5명 이상(이 중에서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모여 활동하고 법인을 구성한 형태. 법무법인 이외의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맡는 형식이지만, 법무법인에서는 마치 회사처럼 법인의 이름으로 운영하여 사건을 의뢰받을 때에도 법인의 이름으로 받는다.

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법률사무'란 법률 상담, 법률문서 작성, 공증업무, 재판 외 화해교섭, 등기업무 등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표 3-1. 국내 변호사업의 현황

(단위: 명)

지방회	변 호 사			법 무 법 인			공증인가합동	
	개인회원	준회원	소계	사무소	구성원	소속변	사무소	구성원
서울	4,141	435	4,576	161	1,107	633	38	196
의정부	139	0	139	8	45	2	0	0
인천	212	10	222	17	90	7	2	6
수원	351	22	373	34	189	9	2	6
춘천	65	7	72	2	9	0	1	4
청주	71	9	80	4	20	2	1	3
대전	206	23	229	6	27	0	1	3
대구	320	15	335	17	86	1	8	23
부산	302	28	330	14	84	8	7	21
울산	59	2	61	5	25	1	0	0
창원	130	6	136	9	44	6	0	0
광주	185	19	204	6	30	1	8	24
전주	92	12	104	4	20	1	3	10
제주	27	4	31	2	11	0	1	3
14개 회	6,300	592	6,892	289	1,787	671	72	299

주: 2005년 1월 20일 현재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표 3-2. 변호사의 업무 구분

구 분	내 용
소 송	-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변론 담당 • 민사/가사/행정 소송: 각종 서면작성 및 제출, 증인, 검증 및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거 신청, 법정 구두변론 • 형사 소송: (법정내)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변론요지서 등 피고인을 위한 변호활동 (법정외)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
법률상담	-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경영, 기술개발, 투자전략 등 모든 경제영역에서 기능
문서 작성	- 법률문서는 일반인의 생활이나 기업체의 경영·영업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음. • 계약서의 작성 • 회사의 정관 및 취업규칙 • 단체의 규칙 및 규약 • 위임장 및 계약에 관련된 통고서 • 정부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 등기·등록 업무
공증업무	- 공증업무는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공증인사무소에서 취급함.
재판외 화해 업무	- 재판 전 또는 재판 중이라도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화해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후 또 다른 분쟁 발생시에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음.
등 기	- 주로 법무사들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나 변호사도 등기업무를 담당함.
세무 업무	- 변호사는 세무사의 세금신고 업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함. - 한편 과세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대리는 오직 변호사만이 가능함.
각종 중재·조정 업무	- 각종 중재·조정신청에서 분쟁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함.
상표·특허 업무	- 특허청에 대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등의 업무를 담당 -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대리인으로 활동 - 일반인이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변호사는 특허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행정심판 등의 업무	-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 이의신청, 재정신청, 재심사청구 등을 대리
사무처리	- 유언 집행 - 신탁재산 관리

나) 자금세탁의 위험성

변호사의 업무는 법무사, 공증인, 세무사 등의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업무영역이 매우 방대하다. 경제규모의 확대 및 활동영역의 세계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하여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는 소송, 법률상담 등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점차 부동산업무, 경매컨설팅,[73] 법무사업무, 경영컨설팅 등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업무영역 이외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의뢰인에 대한 경영 및 일반법률 컨설팅업무 수행, 법인 및 단체의 문서작성, 세무업무, 신탁재산 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세탁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다.

본장 3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변호사의 업무 중 법률자문, 소송활동, 공증업무 순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환 관련, 은행·증권 계좌 관리,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시민권과 관련된 업무, 신탁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도 자금세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글상자 3-1 해외사례: 변호사

- 고객의 계좌로부터 자신 또는 의뢰인의 해외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왔으며 고객이 돈을 필요로 할 경우 자신의 해외계좌에서 자신의 다른 해외계좌 또는 고객의 계좌로 송금함(FATF Typologies, 2003~2004 Case 20).
- 한 유명 변호사의 경우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자금세탁 연계망을 조성하였는

73) 옥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거래하지 않고 제3자, 즉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끼고서 대금을 결제할 경우 법무법인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곳에서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물품대금이 중계기관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 물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고 다시 구매자가 물품이 잘 도착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중계기관이 판매자에게 입금시키는 방식이다.

글상자 3-1. 계속

데, 그 중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외 관할권에 속해 있었음. 그는 주로 시민권과 관련된 소송을 주로 다루었으며, 적지 않은 의뢰인이 사기와 조세위반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밝혀짐(FATF Typologies, 1997~1998 Case 4).

• 마약거래상이 변호사 명의의 신탁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된 돈은 마약거래상에게 건물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FATF Typologies 2003 ~ 2004, Case 22).

2) 회계사

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2004년 12월 현재 국내에는 78개의 회계법인에 4,227명의 회계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고 7,879명의 감사인이 등록되어 있다. 실제로 회계기록의 적부(適否)를 검토하는 감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공인회계사의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은 통상 알려진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감사반이란 회계법인과는 달리 개인사무실을 낸 회계사 중 외부감사만을 위하여 3명 이상 구성된 팀으로 활동한다. 한편 회계법인은 법인 수를 의미하는 '감사인 수'와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를 의미하는 '구성원 수'로 구분한다. 회계사들은 감독자로서 회계감사업무, 기업의 세무상 문제를 해결하는 세무자문업무, 나아가 경영자들에게 조언하는 경영자문업무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3-3. 국내 회계사업 종사자 수

(단위: 명)

구 분	감 사 인		개업일반	휴 업	총 계
	회계법인	감사반			
인원 수	4,227	1,287	367	1,998	7,879

주: 2004년 12월 31일 현재

표 3-4. 구성원 수에 따른 회계업 종사자 수

(단위: 개, 명)

구 분	회계법인		감 사 반	
	감사인 수	구성원 수	감사인 수	구성원 수
100인 이상	9개	2,923명		
50인 이상	4개	240명		
10인 이상	61개	1,032명	7개	74명
10인 미만	4개	32명	283개	1,213명
총계	78개	4,227명	290개	1,287명

주: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www.kicpa.or.kr)

표 3-5. 회계사의 업무

구 분		내 용
감사	법정감사	•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 감사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기타 외국환관리법 등 법령에 의한 감사
	특수목적감사	• 기업 매수 및 합병을 위한 감사 • 법원, 금융기관, 주주 등의 요청에 의한 감사 • 해외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감사 •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

표 3-5. 계속

구 분		내 용
감정·증명(기업진단)		• 건설업 기업진단 • 의약품도매업 기업진단 •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 전기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소방설비업 기업진단
계산·증명		• 회계에 관한 계산·정리는 단순회계계산으로부터 전문적인 계산까지를 포함하며 원가계산, 재무분석, 기장대리, 결산대리임.
입안·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 회계 또는 경리조직의 입안, 법인 설립시 회계처리 및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의 확인 포함
세무대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및 자문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증명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등 재산세
	세무계획 수립	• 장·단기 세무계획과 연계한 재무계획의 수립 • 기업의 결산대책, 조세절감방안 수립 • 특정거래, 계약 등에 따른 세무문제 검토
	세무분쟁 해결	•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대행 • 세무감사 보조 • 세무실사에 대비한 기업의 회계처리, 증빙에 대한 사전검토
	회사의 설립, 합병 관련 세무	• 회사의 설립계획단계부터 설립 후 세무계획 및 대책수립 • 기업합병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한 세무문제의 사전검토
	국제조세 관련 업무	• 이전가격세제 • Anti-Dumping • 고정사업장에 대한 자문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관련한 세무업무 자문 • 합작투자와 기술도입에 관련된 자문, 인가신청, 신고대리 •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관련된 자문

표 3-5. 계속

구 분		내 용
경영자문 업무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 경영환경 분석과 내부자원 평가 • 경영 전반에 관한 목표와 정책 검토 •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등
	경영혁신과 조직재편 컨설팅	• 기업의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기업조직의 재편 및 최적화
	정보시스템 자문용역	• 정보시스템 전략계획 수립 •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Case Tool 및 Client Server 컨설팅
	소프트웨어 패키지 컨설팅	• LAN 환경의 통합소프트웨어 설치 및 교육컨설팅
	사업타당성 분석	• 시장분석 및 예측 • 신규투자를 위한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 기업인수, 합병대상의 선정 및 평가

나) 자금세탁의 위험성

회계사는 법정감사와 특수목적감사 등의 감사업무, 법인설립, 기업진단, 세무대리, 경영자문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금세탁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자금흐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자문과 참여를 의뢰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안형도 2004), 국내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유형 중 가·차명계좌 거래(17%), 매출전표위조 및 장부 조작(10%), 환치기(10%) 등 회계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장 3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회계사의 업무 중 경영자문, 세무업무, 감사활동 순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환 관련, 지점·대리점 등 회사 설립,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 세무대리업

무, 회계감사, 국제 조세 관련 업무, 감정·증명 등 기업진단업무, 신탁과 관련된 업무, 전략적 제휴 및 구조조정 등에서도 자금세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라) 사례

글상자 3-2. 신○○그룹 외화도피 사건

- ○○그룹 C회장이 계열 종합무역회사인 (주)신○○을 통해 위장수출입 방법으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사기대출과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 사례로 이 과정에서 (주)신○○의 고문이자 회계사로 활동 중인 K가 깊숙이 관여되었음.
- ○○그룹 C회장과 (주)신○○ 전 대표 G은 K과 공모하여, 1996년 6월~1997년 6월 미국령 바하마 소재 '스티○○○○○서널'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여 사하공화국 '골드○○'사에 수출한 양 허위 무역서류를 꾸몄다. 이 서류를 가지고 조흥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조로 2,829만 8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9회에 걸쳐 도합 1억 8,750만 달러의 수출금융을 편취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스티○○○○○서널'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흥은행을 통해 체이스맨해튼은행 뉴욕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이스맨해튼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스티○○○○○서널'사 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2,484만 2,800달러를 송금하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스티○○○○○서널'사 계좌로 1억 6,592만 달러를 송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 그러나 1998년 4~12월 (주)신○○이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수출금융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 측으로부터 이 채무를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자신이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자신의 개인재산을 보전하고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생명보험(주)에서 (주)신○○에 8회에 걸쳐 아무런 담보없이 1억 8,237만 원을 대출해 주도록 하여 (주)신○○과 자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생명보험(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대기업 대표, 회계사
  - 자금세탁 수법: 위장무역거래, 전신송금, 유령회사
  - 전제범죄: 재산국외도피

(『실무속보』, 제200호, 1999년 3월 31일)

[글상자 3-2]의 경우 검찰은 C회장이 가짜 선하증권 등 허위서류로 국내은행으로부터 1억 8,500여만 달러의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편취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설비기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미국계 은행에 1억 6,500여만 달러를 예치한 것이 펀드 조성을 위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가 미국에서 회계사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 K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해외에 펀드를 조성해 놓으면 국내 외환관리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파생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면 수익성도 매우 높아 해외펀드 조성에 적극적인데 이러한 과정에 회계사 K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글상자 3-3. (주)○○어스 회사자금 횡령 등 사건 수사결과

- 2002년 2월 중순경 前 (주)○○어스 대표이사 L이 前 (주)○○어스 대표이사 R과 ○○어스를 9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이 없어 1차 중도금 5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 거래를 알선한 공인회계사 J, M&A 전문 중개인 M으로부터 ○○어스 회사자금 50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L, R은 이를 승낙한 후 공모하였다.
- 2002년 2월 20일 R은 위 회사 자금으로 발행된 CD 53억 원을 임의로 가져가 기업은행 이수교 지점에서 L에게 넘겨주고, L은 위 CD 53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마련한 50억 원을 R에게 매매중도금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 이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면서 회사자금 53억 원 횡령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 J(공인회계사)는 4억 7천만 원, M은 2억 7천만 원을 각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 또한 공인회계사인 P는 위와 같이 횡령한 회사 CD 53억 원을 그대로 다시 R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할 경우 범행사실이 바로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에 부탁하여 무담보로 50억 원을 우선 대출받아 R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사후 위 CD 53억 원으로 이를 상계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범죄수익인 위 횡령한 회사자금 중 3억 원을 수수하였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기업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자금세탁 수법: 횡령자금 CD 사후 상계
  - 전제범죄: 업무상 횡령, 알선수재

(대검찰청 2004년 7월 28일자 보도자료)

[글상자 3-2]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어스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회사를 양도·양수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53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M&A 전문중개인 및 공인회계사들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CD를 자금세탁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수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나타난 사례이다.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1) 카지노

가) 일반 현황과 업무

카지노업은 1991년 3월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행행위업 일환으로 규정되어오다가 1994년 8월에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되었다. 그 후 1995년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의 설치를 허용하는 「강원도폐광지역개발특별법」을 근거로 강원도 정선에 우리나라 최초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개장되었고 1998년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마작장 개설도 허용되었다. 현재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운영·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지노 영업허가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도 1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는 제주 8개, 서울·부산·인천·경북(경주)·강원도(설악)에 각 1개 업체,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로 강원도(정선)에 1개 업체 등 총 14개 업체가 있다.

표 3-6. 카지노업체 현황 및 매출액, 입장객(2003년)

(단위: 원, 명)

시·도	업소명 (법인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매출액	입장객 수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1968. 3. 5	임대 (특1)	223,025,962,800	386,047
부산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주)파라다이스부산]	1978. 10. 29	직영 (특1)	53,402,452,500	99,433
인천	파라다이스오림포스카지노 [(주)파라다이스인천]	1967. 8. 10	직영 (특2)	14,930,317,000	18,113
강원	설악파크호텔카지노 [제원산업관광개발(주)]	1980. 12. 9	임대 (특2)	525,003,400	4,802
경북	웰리치조선호텔카지노 [(주)웰리치(WellLich)]	1979. 4. 11	직영 (특1)	4,779,795,500	15,294
제주	제주칼카지노 [제주칼관광(주)]	1975. 10. 15	임대 (특1)	9,189,003,601	9,787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1990. 9. 1	임대 (특1)	22,696,584,000	31,136
	신라호텔카지노 [(주)콘티넨탈]	1991. 7. 31	임대 (특1)	14,993,918,000	10,705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오리엔탈관광]	1990. 11. 6	직영 (특1)	5,549,463,500	9,293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1985. 4. 11	임대 (특1)	25,281,838,500	25,238
	크라운프라자카지노제주 [(주)정봉]	1990. 9. 1	임대 (특1)	11,501,130,951	13,706
	하얏트호텔카지노 [골든타임(주)]	1990. 9. 1	임대 (특1)	6,860,078,000	2,606
	제주퍼시픽카지노 [(주)신성개발]	1995. 12. 28	임대 (특1)	5,742,003,324	4,314
13개 업체(외국인 대상)			직영:4 임대:9	398,477,551,076	630,474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 (내국인대상)	2000. 10. 12	직영 (특2)	654,988,767,990	1,547,823
14개 업체(내·외국인 대상)			직영: 5 임대: 9	1,053,466,319,066	2,178,297

자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4조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및 내부통제를 위하여 이사회, 카지노 총지배인, 영업부서, 안전관리부서, 출납부서, 환전상, 전산전문요원 등을 갖추어야 한다.

표 3-7. 카지노의 조직 구성 및 업무

구분		자격 및 구성요건	주요 업무
이사회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등기임원 2년 이상인 자 • 카지노업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관광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카지노 정책을 1년 이상 담당한 자	• 이사회는 카지노 영업활동과 내부통제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영업부서	딜러 (Dealer)	- 1테이블당 1명 이상(메인바카라는 테이블당 3명 이상)	• 게임테이블에 배치되어 직접 고객을 상대로 게임을 진행 • 동시에 2테이블 이상의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음
	플러어퍼슨 (Floor Person)	- 6테이블당 1명 이상(메인바카라는 2테이블당 1명 이상)	• 각 게임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1차 감독
	피트보스 (Pit Boss)	- 24테이블당 1명 이상	• 각 게임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2차 감독
	시프트매니저 (Shift Manager)	- 3명 이상	• 담당 근무시간 동안 카지노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업행위를 감독
카지노 총지배인			• 영업장내의 게임 운영 총괄 • 카지노 영업장내의 시설 및 기구 관리·감독 • 영업준칙 준수 지도·감독 • 콤프, 크레딧, 알선수수료 및 계약게임의 기준 설정 • 카지노 고객 유치 및 관리

표 3-7. 계속

구분	자격 및 구성요건	주요 업무
안전관리부서	- 카지노 영업장의 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감시자가 되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함.	• 내국인 출입통제 • 영업장의 질서 유지 • 고객 및 종사원의 안전 • 폐쇄회로시설 운영 및 관리
출납부서		• 게임테이블의 영업을 위한 칩스의 공급 및 회수 • 카운트룸(Count Room) 운영 및 관리 • 영업과 관련된 현금, 수표, 유가증권의 거래 및 보관 • 기타 출납운영과 관련된 업무
환전상		• 고객이 제시하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 • 고객이 게임 종료 후 남아 있는 원화 또는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원화를 외화로 재환전
전산전문요원	- 전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명	• 카지노 전산시설을 관리·운영

나) 인터넷 카지노의 확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놀이욕구를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카지노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카지노는 불법화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부가 경찰청, 관세청 등과 합동하여 인터넷 카지노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가 정부의 간섭을 피해 바하마 등 중남미지역에 옮겨 놓고 국내법의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카지노는 법의 감시망을 뚫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영상물등급

위원회가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이트 수가 2004년 32건에서 2005년 11월까지 60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도박 관련 메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 사이트는 2004년 6개에서 2005년 8월까지 33건으로 증가하였다.[74]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크고 작은 100여 개의 도박사이트가 성업 중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75]

인터넷 카지노는 신용카드나 전신환을 통해 칩(chip)을 구입하고 컴퓨터 화면상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비록 인터넷 카지노는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돈을 잃거나 딸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인터넷 카지노 또한 자금세탁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개·폐장 시간이 따로 없고 참여하는 사람의 수나 액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게임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수십만 달러의 돈을 거의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다.[76]

다) 자금세탁의 위험성

우리나라의 카지노는 총 14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강원랜드 한 곳만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허용되어 있다. 한국의 카지노는 외국의 카지노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77]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로 외국과 비교하여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개설된 사설 카지노를 통한 자금세탁의 가능성

74) 『중앙일보』(2005년 12월 8일자)

75) 『노컷뉴스』(2005년 10월 6일자)

76)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므로 그 안의 데이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록을 암호화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그 규제가 어렵다.

77) 2003년 매출액은 강원랜드가 6,550억 원으로 강원랜드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13개 업체의 매출액을 모두 합친 금액(3,986억 원)보다 많다.

도 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인구가 많고 인터넷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등 인터넷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 카지노의 업무 중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출납업무, 환전업무 등이다.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마약거래자들이 소액의 화폐를 거액권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도박자금을 빌려 쓴 후 국내에서 환치기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라) 사례

글상자 3-4.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사건

-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는 2～3명의 한국인 전담 마케팅 책임자가 있어 이들이 수시로 국내외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도박하도록 판촉활동을 한다. 도박자금을 차용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인이 카지노 현금 출납사무소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인적사항, 재산관계 및 차용내용을 기재하여 출납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면, 평균 2개월의 변제기간을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차용해 준다. 차용금을 도박에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을 주지 않고 출납사무소 직원이 차용내용을 카지노 컴퓨터에 전산입력한 후 현금 대신 카드를 교부하여 차용자들로 하여금 도박 테이블에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차용금 범위내에서 칩을 받아 도박을 하게 한다.
- 마케팅 책임자들이 국내에 직접 들어와 수금하거나 친지들을 통하여 송금케 한다. 고액 차용자들에게는 약 10% 정도를 감액해 주고, 변제 불응시에는 법적 대응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차용자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의식하여 변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수금된 돈은 미국과 거래가 있는 국내 무역업자들에게 미국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미국에서 수입업자로부터 변제받는 환치기 방법을 이용하여 밀반출하여 왔다.
- 피의자 C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미라지(Mirage)호텔 카지노 담당자로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에게 도박자금을 차용해 주고 이를 국내에서 반출해 오던 중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년 10월～1997년 10월 국내에서 도박자금 차용자 6명으로부터 4억 6,700만 원을 변제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이를 불법 반출하였다.
- 또한 피의자 J는 트로피카나(Tropicana)호텔 카지노의 마케팅 담당자로서 카지노 이용하는 한국인들에게 도박자금을 차용해 주고 국내에서 수금하여 반출해 오던 중, 당국의 허가를 받

글상자 3-4. 계속

지 아니하고, 1997년 8월~9월 국내에서 도박자금 차용자들로부터 7,300만 원을 수금하여 2,748만 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카지노 직원, 기업 대표
- 자금세탁 수법: 환치기
- 전제범죄: 상습도박, 외화국외유출

(『검찰공보』 제180호, 1997년 12월 1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사건에서는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마케팅 책임자들이 한국인 고객을 상대로 자금을 차용하도록 판촉활동을 하여 사행심을 부추기고 불법 외화유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44명에 이르고, 적발된 도박차용금이 1,100만 달러(100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들이 사회 각층에 분포되어 해외원정도박 풍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글상자 3-5. 청년사업가 '도박 덫'에 침몰

- 일류 연예기획사 및 서울 강남 유명 나이트클럽 대표 출신인 H는 2002년 11월 15억여 원을 환치기해 마카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2003년 10월에는 강남 한 특급호텔에서 100억 원대 불법사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대학 때 '아이스베리'라는 빙수체인점을 창업, '대학생 성공신화'로 이름을 날렸던 K는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H와 어울려 다니며 마카오 및 국내 사설 카지노 등지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80억 원 상당을 도박에 쏟아부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 대부분을 탕진하였다.
- 해외 유명 카지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원정도박을 알선하다 H 등과 함께 덜미가 잡힌 서방파조 직원 L 등 이른바 '롤링업자'[78] 3명은 고액의 도박 참가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의 20% 가량을 카지노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연예기획사 대표
  - 자금세탁 수법: 환치기
  - 전제범죄: 도박

(『한국경제신문』 2004년 11월 1일자 기사)

[글상자 3-5]에서는 환치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도박자금을 빼돌려 국내외 유명카지노 등에서 수백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해외원정도박단이 검찰에 적발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글상자 3-6. 컴퓨터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한 '짱구방' 조직 단속결과

- 최근 유명 게임사이트의 인터넷 도박게임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도박게임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아바타를 대량으로 구입하거나(아바타 구입시 제공되는 마일리지를 사이버머니로 전환 가능), 사이버머니 환전상을 통해 현금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있어, 사이버머니가 현실적으로 현금과 다름없이 유통되고 있다.[79]
- 이러한 인터넷 도박 열풍과 사이버머니의 현금성을 이용하여 수십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따낸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거액을 챙기는 일명 '짱구방' 조직이 성행하였다.
- 5명이 1개 조로 게임이 진행되는 인터넷 포커게임에서 4명이 서로 짜고 4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접속한 후 각자의 카드패를 서로 알려주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일명 '손짱구')으로 사이버머니를 편취하는 사례가 과거 종종 있었으나, 이 방법은 최소한 4명의 인원이 동시에 필요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승률이 높지 않았다.
- 피의자 A, J 등은 이에 착안하여 5대의 컴퓨터를 1세트로 하여, 그 중 4대의 컴퓨터에서 1대당 1개의 게임 ID로 포커게임에 동시에 접속을 하면, 나머지 1대의 컴퓨터에 위 4대 컴퓨터의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1명이 4대 컴퓨터의 키보드 조작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일명 '짱구 프로그램'을 2003년 6월 최초로 개발하여 '짱구프로그램' 100여 개를 개당 100만~200만원에 판매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판매수익을 올렸다.
- '짱구방' 운영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각자 5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동시에 4개의 ID로 포커게임에 접속한 후 한꺼번에 4명분의 카드패를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게임에 참가한 상대방과 포커게임을 벌여 하루에 많게는 500조 원(환전금액 5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정기적으로 사이버머니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통상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1:1 맞포카를 통해 환전상에게 한판에

78) 해외원정도박 및 환치기 등을 알선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인 '롤링비'를 받는 에이전트를 말한다.

글상자 3-6. 계속

전부 잃어주고, 환전금액 상당액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짱구방 운영자, 사이버머니 환전상
- 자금세탁 수법: 전신송금, 현금 환전
- 전제범죄: 사기도박

(대검찰청 2004년 7월 15일자 보도자료)

글상자 3-7. 까르푸 관련 340억 원 상당 스위스 밀반출 사건

- 국내 까르푸주식회사의 고문 겸 리첼사[정식명칭 : Richel Group Hong Kong Limited(영업소)]의 대표인 H는 100% 외국투자기업인 까르푸주식회사의 부동산 매수를 컨설팅하면서 340억 7천만 원을 빼돌려 홍콩에서 무역상을 하던 아르헨티나 교포 C의 소개로 알게 된 서귀포 ○호텔 카지노 전무이사인 K에게 스위스로의 송금을 부탁하였다.
- K는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롤링 사무실을 L과 같이 운영하던 중 H로부터 송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당시 롤링사무소에 상근하고 있던 R에게 송금액의 1.5% 내지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이 돈의 환치기식 송금을 다시 부탁하였다.
- R은 같은 화교인 W과 같이 K의 지시대로 1회 2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씩 모두 80여 회에 걸쳐 이 돈을 받아서 국내로 들어오는 홍콩・대만의 보따리장사들에게 국내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 대신에 홍콩 소재 항생은행・홍콩은행에 개설하여 둔 예금계좌(개설자 Y, W, G 등)로 홍콩달러를 송금하게 하고 다시 Y 등으로 하여금 H가 지시한 스위스 취리히 소재 Union Bank(Richel사 명의 계좌)나 Clariden Bank(Aleria사 명의계좌)로 홍콩달러나 미국달러를 송금하게 한 것이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 기업 대표, 호텔카지노 전무이사
- 자금세탁 수법 : 전신송금, 환치기
- 전제범죄 : 횡령, 외화국외유출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 1999, 서울지방검찰청)

79) 한게임 사이버머니는 100조 원에 7~15만 원, 피망게임 사이버머니는 1조 원에 9~16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게임업계에서는 사이버머니 및 게임아이템 거래시장규모가 연간 3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귀금속상

가) 일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수정과 옥 등 극히 일부만 생산되고 그 이외의 보석과 원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귀금속・보석 산업은 대부분 원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재수출 또는 내수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귀금속・보석 산업의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상 75.2%(2천 개 업체), 소매상 20.5%(7,650개 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2,660개 업체, 소매상이 3만 7천 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7만 5천 명 정도이다. 5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5인 이상의 357개 사업체 가운데도 5～9인인 사업체가 226개, 10～19인 74개, 20～49인 40개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100～199인의 비교적 대규모 사업장은 4곳에 불과하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3)에 의하면 귀금속제의 신변장신구 및 부품을 만드는 사업체가 286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귀금속제의 세공품 및 부품이 22개 업체, 귀석 및 반귀석[80]과 관련된 업체가 14개 업체이다. 기타 업체로는 보석제 제품과 법정주화를 만드는 업체 등이 있다.

귀금속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3년 면세금지급제도[81]가 행해진 200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80) 원석을 1차 가공한 제품

81)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되는 금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한시적(2003. 7～ 2007. 12)으로 도입되었다. 면세조건은 세무서장의 거래승인을 받은 사업자간의 거래로 매입자가 추천기관(상공회의소 등)의 추천을 받는다.

표 3-8. 귀금속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1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감률
수출	69	72	349	391	317	823	18.9
수입	71	126	137	135	167	159	6.6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금시장의 수출입은 2000년부터 감소하다 부가세 한시적 면제조치가 시행된 2003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표 3-9. 금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전년동기대비(%)
수 출	161	121	107	165	199	246
수 입	245	188	176	244	213	144

자료: 관세청(2004. 7. 21), 보도자료.

[표 3-10]에 나타난 국내외 금시세의 차이를 살펴보면 면세금지급제도가 시행된 2003년 7월부터 국내외 금시세의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10월부터 다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시세차가 급등한다는 것은 금 밀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82]

82) 관세청 2004년 6월 말.

표 3-10. 국내외 금시세 현황

(단위: 원, 돈당)

구 분	국내가격	국제가격	시세차액
2003년 1월	54,500	51,868	2,632
2003년 2월	54,000	49,721	4,279
2003년 3월	53,000	50,587	2,413
2003년 4월	51,700	49,258	2,442
2003년 5월	56,200	52,524	3,676
2003년 6월	53,700	49,776	3,924
2003년 7월	53,700	50,475	3,225
2003년 8월	55,500	53,374	2,126
2003년 9월	55,600	53,812	1,788
2003년 10월	56,700	54,831	1,869
2003년 11월	60,500	57,816	2,684
2003년 12월	62,500	60,263	2,237
2004년 1월	60,200	56,632	3,568
2004년 2월	60,000	56,156	3,844
2004년 3월	62,300	58,937	3,363
2004년 4월	58,700	54,701	3,999
2004년 5월	59,800	55,394	4,406
2004년 6월	59,200	54,586	4,614

자료: 관세청(2004. 7. 21), 보도자료.

나) 자금세탁의 위험성

정부는 무자료 금거래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하여 면세금지금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금의 상당 부분이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귀금속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7월 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 단속실적은 2,934건, 3조 5,9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금,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밀수로 적발한 경우가 217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도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05년 상반기 총 48건을 고발하고 8,422억 원을 추징하였다.[83]

표 3-11. 금괴 밀수 검거실적

(단위: kg, 백만 원)

유 형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여 행 자	28	605	7,971	6	24	269	5	442	5,251
선원승무원	2	8	98	2	149	2,466	2	2.6	46
특송화물	5	10,834	146,900				1	0.4	6
기 타	2	82	1143				1	30	512
총 합 계	37	11,529	15,6112	8	173	2,735	9	475	5,815

자료: 관세청(2004. 7. 21), 보도자료

귀금속상의 자금세탁은 밀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은 가치에 비해 부피가 작을 뿐 아니라 자유자재로 변형시켜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귀금속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83) 2003년 487억 원, 2004년 4,765억 원, 2005년 상반기 3,170억 원이다. 국세청(2005. 9. 22), 보도자료.

다) 사례

글상자 3-8. 거액여행자수표(T/C) 등 외환해외밀반출사범 적발

- 불법으로 매도된 여행자수표가 불법매매전문조직에 의해 금괴밀수자금으로 해외로 반출되고 이 과정을 통해 밀수된 금괴가 금도매상들에게 판매되어 국내 금 소요량의 약 70%를 충당하고 있다.
- 시중은행들이 여행자수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에 급급해 하는 현실을 악용한 불법매매전문조직은 국내여행사나 해외이주 화물취급업체들로부터 여권사본을 1매당 2천 원씩 주고 대량으로 부정 구입하여 은행에 사본만을 제출하고 사본 1매당 환전한도액인 미화 5천 달러씩의 여행자수표를 대량 매입하여 각종 밀수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판매하였다.
- 이렇게 불법매입된 여행자수표는 금괴밀수조직에 다시 판매되어 해외로부터 다량의 금괴를 들여오는 밀수자금으로 쓰였다. 밀수금괴는 서울 등지의 금도매상 등 귀금속상 사이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통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금도매상, 암달러상, 은행 외환계 직원
  • 자금세탁 수법: 여행자수표 활용, 불법환전, 외화휴대반출
  • 전제범죄: 밀수

(『검찰공보』 제114호, 1992년 6월 1일)

글상자 3-9. 국제 코카인/에메랄드 밀수, 밀매조직 검거

- 에메랄드 중개상인인 Y는 코카인 밀수책인 콜롬비아인 A와 밀수 코카인을 국내에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콜롬비아로 운반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에메랄드 최대생산국인 콜롬비아로부터 에메랄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국내에 에메랄드와 코카인을 밀수입・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한국산 넥타이, 운동화・의류 등을 구입하여 콜롬비아 현지에 되팔아 세칭 '보따리 장사'로 차익을 남겼다.

  • 직접피의자의 직업: 보석 중개상
  • 자금세탁 수법: 시세차익을 위한 불법무역거래
  • 전제범죄: 마약, 밀수

(『검찰공보』 제95호, 1990년 11월 1일)

3) 부동산중개인

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매우 다양다. 중개업자[84]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1999년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보유한 중개업자가 중개인을 상회하였으며 2004년 3/4분기 현재 자격취득자 총 17만 4,047명 중 5만 6,485명이 개업(개업률 32%)하고 있다.

부동산 유통시장이 1996년부터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업계도 전문화, 법인화, 대형화되는 추세이고,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함께 전국적인 체인점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점차 부동산 규모의 거대화, 천문학적 숫자의 거래액, 각종 규제와 제한, 조세, 소유권 문제 등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복잡한 제반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바, 전문직업인으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다.

알선, 중개 외에도 중개부동산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부동산 컨설

84) 중개업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을 갖춰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중개인 중개업자: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즉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 소개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표 3-12. 부동산중개인 수

(단위: 명)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2004년 9월 30일	71,661	56,485	14,632	544
2004년 6월 30일	72,180	56,645	14,979	556
2003년	67,384	51,354	15,490	540

주: 2004년 9월 말 현재
자료: 건설교통부 통계자료

팅) 업무도 포함되며 부동산중개 체인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 개발,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루고 있다.

나) 자금세탁의 위험성

부동산거래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도자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저히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입장에서 매수자가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매수자의 신원파악, 실소유자 여부 등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미국과 같이 위탁업무를 하지 않고 중개업무만 하고 있어 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는 불법분양권 전매, 이중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등이 암묵적으로 행해져 왔다. 또한 금리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부동산불패'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 자금세탁 수단으로 부동산시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액수가 큰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한 사람 명의로 구입하지 않고 차명,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호텔 등과 같이 매입가격이 높으면서 현금거래가 많은 부동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의 업무 중 고가의 부동산 매매, 명의신탁, 분양대행 순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로는 부동산 매매 및 알선, 명의신탁과 관련된 업무, 외국 소재 부동산 매매 알선, 고가의 부동산 거래, 분양권 매매 및 전매, 대규모 사업부지 매수, 매매대금의 취급 등이 있다.

글상자 3-10. 해외사례: 부동산중개인

- 조세피난처의 부동산중개인인 A는 유럽에 있는 국가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 외국의 공증인 B에 의해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 거래에 관련된 많은 사람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었으며 조사결과에 의하면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금융사기를 위한 자금세탁의 일시적 송금계좌로 사용되었다(FATF Typologies 1997~1998, Case 1).
- 유럽의 한 국가에 범죄조직을 가지고 있는 Jameson가는 150만 달러를 호가하는 남유럽의 건물을 매입하여 자금을 세탁하였다. 그들은 총 20만 달러에 달하는 두 개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자금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수표는 보험을 계약한 개인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증인과 유럽 환전소가 지급인으로 되어 있었다(Egmont Group Cases, p. 17).
- 유럽 국적을 주장하는 미국인 R은 자금세탁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위하여 변호사, 은행관계자 및 다른 전문인력을 고용하였다. 또한 고용된 인력들에게 3~5%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그 비율은 시장가를 약간 웃도는 액수였다. R은 자금세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에 다수의 개인과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몇몇 개인은 자금의 부당한 출처를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다수의 회사는 부지불식간에 이용당하였다(Egmont Group Cases, p. 52).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국내 자금세탁의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금세탁은 2001년 말에 들어서야 실질적으로 범죄화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는 자금세탁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사례 분석의 개요

자금세탁과 관련한 국내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1995~2000년의 검찰 사건기록을 모은 각 연도별 『검찰공보』 및 『실무속보』,[85] 서울지방검찰청이 발행한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총 710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 중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및 수법이 나타난 사건기록은 4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 사건은 '자금세탁'이라는 용어가 직접 언급되거나 전제범죄의 발생으로 획득한 불법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전환시킨 수법이 언급된 사건들을 분류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수사건수에서 자금세탁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5년 4%, 1999년에는 9%, 2000년도에는 상반기까지의 사건수사기록 중 5%를 차지하고 있다.

85) 『검찰공보』 및 『실무속보』는 대검찰청에서 매달 발행하던 문건으로, 1998년 이후 『검찰공보』가 『실무속보』로 대체되어 발간되었으며 2000년 8월 이후의 사건기록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전산화되어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않고 있다.

표 3-13. 자금세탁 관련 건수

연도		전체 수사건수(A)	자금세탁 사건건수(B)	비율(B/A, %)
검찰공보	1995년	136	6	4
	1996년	155	4	3
	1997년	178	8	4
	1998년	62	4	6
	1999년	55	5	9
	2000년	41	2	5
	소 계	627	29	5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		83	14	17
전 체		710	43	6

나. 항목별 분석

1) 전제범죄의 유형 분석

자금세탁 관련 사건기록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전제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횡령 11건, 재산해외도피 10건, 뇌물 9건, 사기 9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네 가지 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4. 자금세탁 사건 직접 관련 피의자의 전제범죄 유형 분류

(단위: 건수)

범죄유형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998년 특별 수사사례집	합계
탈 세		1				1	1	3
뇌 물	1		6				2	9

표 3-14. 계속

범죄유형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998년 특별 수사사례집	합계
횡 령	3		4			1	3	11
배임수증재	1	1			1	1	1	5
재산도피					1		9	10
폭 력	1				1			2
사 기		2		3	2	1	1	9
밀 수	1						1	2
도 박			1					1
기 타		1	1	1	1		3	7
전 체	7	5	12	4	6	4	21	59

2) 자금세탁 사건 직접피의자의 직업 유형 분석

자금세탁 관련 사건 43건에 기록된 피의자 중 전제범죄의 실행 및 자금세탁 행위에 직접 가담한 직접피의자 168명의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 [표 3-15]와 같이 구분·정리할 수 있다.

표 3-15. 자금세탁 직접피의자의 직업 분류

직업 분류	검찰공보 연도별 분류						1998년 특별 수사사례집	전체 건수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입법공무원					1			1
고위정부공무원					1			1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6	2	2	3	9	22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직원					2			2

표 3-15. 계속

직업 분류	검찰공보 연도별 분류						1998년 특별 수사사례집	전체 건수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종합관리자	7	2	26	2	2		10	49
생산부서 관리자							1	1
기타 부서관리자			3					3
사업전문가					1			1
관세, 조세관련 공무원	10		1		3		4	18
금융 및 판매준전문가		1		8			2	11
대금수납원, 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	4	2	2				9	17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		1						1
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4						4
기 타	1	1		1	1		33	37
전 체	22	11	38	13	13	3	68	168

직접피의자의 직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종합관리자로 중소기업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며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직업군은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로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회장, 대표이사 및 대학교 총장들이 주로 이 분류에 속하며 재산해외도피 및 뇌물 등의 범죄에 다수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관세·조세 관련 공무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세관검사원, 조세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네 번째로 빈번히 나타나는 직업군은 대금수납원·금전출납원 및 관련 사무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수납원, 경리사원 등 대금수납원이 여기에

속하며 자금을 직접 다루는 만큼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및 판매준전문가들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금융증서,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사업서비스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며, 세부적인 직업들을 살펴보면 외환중개인, 증권중개인, 주식중개인, 투자중개인 등이 있다.

3) 자금세탁 수법의 유형 분석

1995~2000년 7월까지 수집된 검찰공보 사건기록은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된 사건으로, 전제범죄 발생으로 인한 자금세탁행위가 범죄화되기 이전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3-16]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대 국내 자금세탁 수법은 가·차명 계좌 거래나 부동산 구입을 통한 자금전환 등 비교적 단순하였다. 하지만 2001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 마련된 이후 법적 감시망이 강화될수록 자금세탁의 수법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6. 자금세탁 수법의 유형 분류

구 분	자금세탁 수법	빈도수	백분율(%)
무역거래	외상 수입대금 미지급	1	1
	위장무역 거래	4	5
	수출입가격 조작	1	1
서비스거래	국제운송 수입/지출 허위신고	1	1
자본거래	부동산 거래	11	13
	금융기관의 기업비자금 관리	1	1
	주식매매대금 허위신고	1	1

표 3-16. 계속

구 분	자금세탁 수법	빈도수	백분율(%)
기타거래	가·차명계좌 거래	14	17
	도명계좌 거래	1	1
	전신송금	6	7
	매매/매출 전표위조 및 장부조작	7	10
	환치기	8	10
	불법환전	5	6
	외화휴대반출	2	2
	외화송금수표/여행자수표 활용	3	4
	현금분할 거래	3	4
	경비 허위계상	4	5
	현금수표세탁	2	2
	유령회사	6	7
	전위회사	2	2
전 체		83	100

한 사건 기록당 사용된 수법의 빈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수법이 사용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33%, 두 가지 수법이 사용된 경우가 13건으로 전체의 28%, 세 가지 수법이 사용된 경우가 12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섯 가지의 수법이 사용된 사건기록도 1건이 있었으나 국내 대부분의 자금세탁 사건들은 대체로 세 가지 이하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금세탁의 유형별 수법 분석(안형도 2003, p. 90)에 기초하여 검찰공보와 특별수사사례집에서 수집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범죄수익금을 가·차명계좌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하는 사건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거래의 경우 외상수입대금 미지급 1건, 위장무역 거래 4건, 수출입가격 조작이 1건으로 위장무역 거래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위장무역 거래 수법 사용시 유령회사나 전위회사를 앞세워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거래에서는 국제운송의 수입・지출 허위신고가 1건 관찰되었으며, 자본 거래의 경우 부동산 구입의 수법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고 있다.

기타 거래에서는 가・차명 계좌 거래가 14건, 도명계좌 거래 1건, 전신송금 6건, 외화송금수표・여행자수표 활용 3건, 현금분할 거래 3건, 현금수표세탁 2건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폭력조직이 연루된 사건기록의 경우, 조직폭력배가 유령회사를 세워 딱지어음을 제조・매도하고 불법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장회사를 자금세탁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환치기도 국내에서 주요한 재산해외도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1995~2000년의 『검찰공보』, 『실무속보』 및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을 통해 분석한 43건의 자금세탁 관련 사건기록 중에서,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직접피의자로서 사건에 직접 개입되었거나,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자금세탁행위를 관찰 또는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43건의 자금세탁범죄 중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가 관련된 범죄는 10건으로 관찰되었다(부록 3의 사례 참고). 구체적으로 변호사 2건, 회계사 4건, 카지노 2건, 부동산중개인 4건 등이 자금세탁에 연루 및 관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6]

86) 한 사건에 여러 분야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가 관여된 사례도 있어 분석결과 수는 10건의 사건기록 수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용이한 위장을 위해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들은 자금세탁의 범죄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자들이 범죄의 준비단계에서 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그 행위를 합법적으로 포장하는 데 변호사 등이 쉽게 관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행위를 관찰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회계사가 자금세탁 범죄행위를 관찰하거나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총 4건이 수집되었다. 특히 회계사가 대기업 총수의 재산해외도피에 연루된 사건이 눈에 띄며 그 외 대규모 탈세사건에 빈번히 연루되고 있다. 이 범죄의 허위전표 작성 및 변칙 회계처리 등은 회계사들이 범법과정이나 감사 중에 감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를 주업무로 하는 회계사들의 범죄 연루나 인지 가능성은 여타 전문가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무소 사무장이 허위 세무자료를 만들어주는 등 탈세를 방조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횡령한 자금를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자금세탁 수법의 유형 분석이 보여주듯이(표 3-16 참고) 가·차명 계좌 거래 다음으로 부동산 구입이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 범죄 관찰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객이 거주하는 현지에서 수금하여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등 환치기 및 재산해외도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카지노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환치기 및 불법자금 반출의 사례가 목격된다.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3개 직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방문,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였다. 유효 응답자 수는 158건으로 나타났고 변호사 20건, 회계사 54건, 부동산중개인 84건이었다.

설문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4개 문항에서는 응답자 개인에 대한 배경 및 자금세탁에 관한 기초지식을 물었으며 두 번째 부분(나머지 9개 문항)에서는 자금세탁의 위험성 정도 및 권고사항의 실천 여부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표 3-17]의 개인별 배경 분석표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부동산중개인의 나이가 변호사나 회계사와 비교하여 많았으며 종사기간은 직종과 관계없이 1~5년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나이가 50～59세인 응답자 45%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회계사는 30～39세(각각 35%, 52%)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기간은 1～5년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87] 1년 미만, 20년 이상인 응답자도 포함되어 있어 종사기간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ATF 권고사항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FATF 권고사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ATF 권고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가 변호사

87) 총응답자 가운데 전문직 종사기간이 1~5년 사이인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은 각각 30%, 30%, 56%로 나타났다.

표 3-17. 전문직종사자 개인별 배경 분석

구 분	항 목	변 호 사		회 계 사		부동산중개인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연 령	20 ~ 29세	3	15	8	15	0	0
	30 ~ 39세	7	35	28	52	10	12
	40 ~ 49세	4	20	8	15	22	26
	50 ~ 59세	4	20	6	11	38	45
	60세 이상	2	10	4	7	14	17
전문직 종사기간	1년 미만	1	5	4	7	3	4
	1년 ~ 5년	6	30	16	30	47	56
	5년 ~ 10년	6	30	12	22	15	18
	10 ~ 20년	4	20	13	24	14	17
	20년 이상	3	15	9	17	5	6
FATF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	매우 그렇지 않다	8	40	17	31	16	19
	그렇지 않다	6	30	27	50	31	37
	보통이다	3	15	6	11	28	33
	그렇다	3	15	4	7	9	11
	매우 그렇다	0	0	0	0	0	0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에 대한 인지	매우 그렇지 않다	4	20	16	30	15	18
	그렇지 않다	10	50	32	59	36	43
	보통이다	4	20	4	7	22	26
	그렇다	2	10	2	4	11	13
	매우 그렇다	0	0	0	0	0	0

70%, 회계사 81%, 부동산중개인 56%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가 변호사 70%, 회계사 89%, 부동산중개인 61%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FATF 권고사항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직종별 분석

1) 변호사

가)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에 관한 설문결과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만약 그 고객이 대리인인 경우 실거래자를 확인하십니까?
- 고객과 실거래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표 3-18.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 실행 정도: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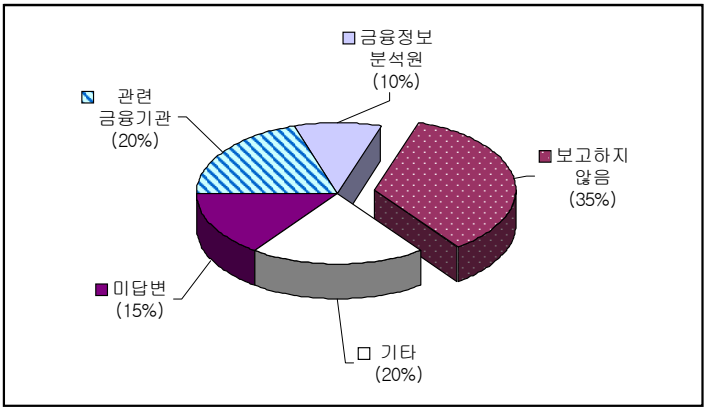
구 분	고객의 신원확인		실거래자 확인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	
	빈도수	전체대비 비율(%)	빈도수	전체대비 비율(%)	빈도수	전체대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	5	1	5	2	10
그렇지 않다	3	15	6	30	6	30
보통이다	4	20	1	5	3	15
그렇다	10	50	9	45	6	30
매우 그렇다	2	10	3	15	3	15
합 계	20	100	20	100	20	100

고객의 신원확인 및 실거래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60%이며 변호사 중 45%가 이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변호사도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젊은 변호사가 50세 이상의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금세탁 혐의거래 발견시 보고기관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을 경우 보고의 유무와 보고기관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보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35%로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금융기관에 보고하겠다는 응답(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신고를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하여 아직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검찰을 주로 언급하였으며(응답수 3, 전체 응답의 20%) 그 외에 자금의 불법성을 고객에게 통지할 것이나 수사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그림 3-1. 혐의거래 보고기관: 변호사



다)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업무영역

변호사의 업무 중 주로 법률자문, 소송활동이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증업무, 문서작성 등의 순이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모든 변호사업무, 조세 관련 업무, 투자자문 등이 있었으며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2) 회계사

가)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에 관한 설문

회계사에게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경우는 23%이며 실거래자를 확인하는 경우는 37%로 나타났다.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2%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회계사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 실행 정도: 회계사

구 분	고객의 신원확인		실거래자 확인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	
	빈도수	전체대비비율(%)	빈도수	전체대비 비율(%)	빈도수	전체대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	4	2	4	1	2
그렇지 않다	7	13	13	24	15	28
보통이다	32	59	18	33	20	37
그렇다	10	19	17	31	15	28
매우 그렇다	2	4	3	6	2	4
미답변	1	2	1	2	1	2
합 계	54	100	54	100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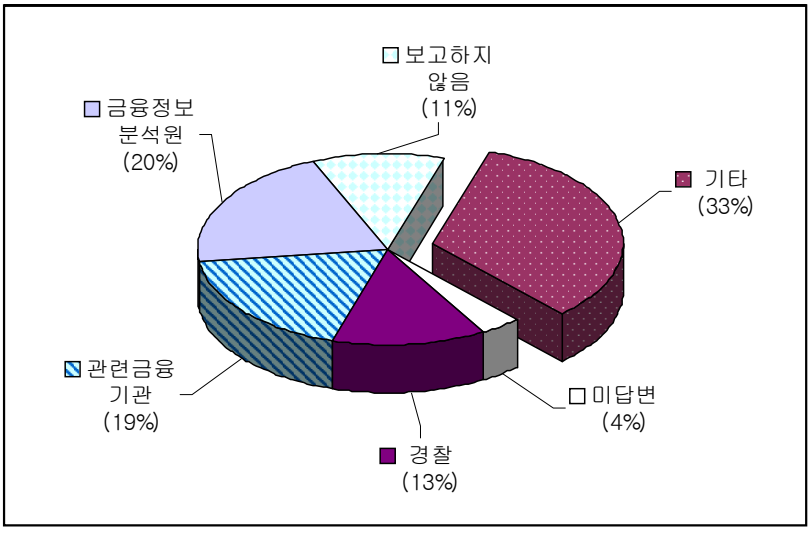
나) 자금세탁 혐의거래 발견시 보고기관

설문에 응답한 회계사 중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보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11%로 변호사 35%, 부동산중개인 61%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금융기관,[88]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5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신고를 하겠다고 대답한 경우는 20%에 불과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2 참고).

기타 응답으로는 회사내 위험관리체계를 통하여 상급자 또는 상부기관으로 보고하겠다는 응답과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회사인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2. 혐의거래 보고기관: 회계사



88) 관련 금융기관에는 은행, 금융감독원, 증권사 등이 포함된다.

다)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업무영역

대부분 경영자문, 세무업무, 감사활동이 자금세탁과 연루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는 회계사의 모든 업무, 문서작성, 용역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3) 부동산중개인

가)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에 관한 설문결과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고 있는 경우는 81%이며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는 92%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은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대리인)의 신원확인보다는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11%만이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40%인 변호사와 30%인 회계사에 비해서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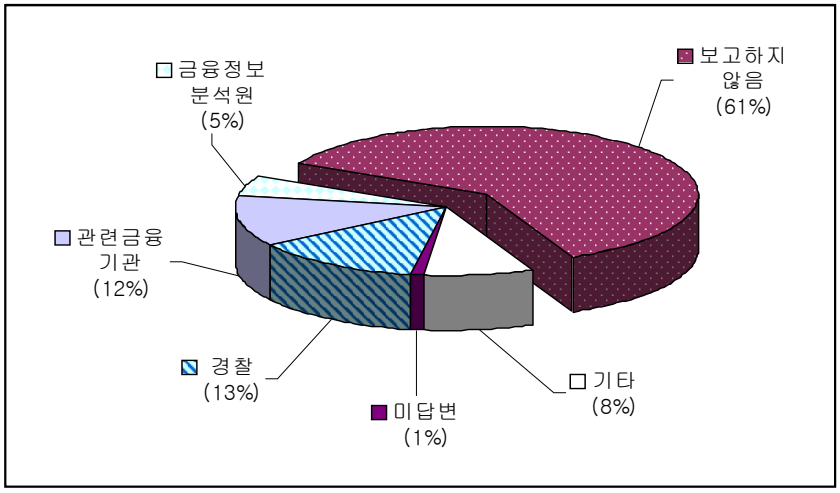
표 3-20.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의 실행 정도: 부동산중개인

구 분	고객의 신원확인		실거래자 확인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	
	부동산 중개인	전체대비 비율(%)	부동산 중개인	전체대비 비율(%)	부동산 중개인	전체대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5	6	0	0	0	0
그렇지 않다	11	13	4	5	9	11
보통이다	0	0	3	4	15	18
그렇다	58	69	57	68	47	56
매우 그렇다	10	12	20	24	13	15
합 계	84	100	84	100	84	100

나) 자금세탁 혐의거래 발견시 보고기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보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1%로 변호사의 35%, 회계사의 11%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3-3 참고). 금융정보분석원, 관련 금융기관, 경찰 등에 보고하겠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국세청 등을 언급하였으며 자금세탁과 부동산중개업과는 큰 상관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3-3. 혐의거래 보고기관: 부동산중개인



다)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 업무영역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에서는 명의신탁 등 차명을 이용한 거래나 부동산 매매나 알선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으로는 고가의 부동산 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불법분양권 매매 및 전매, 단기매매, 융자알선 등이 있었다.

다.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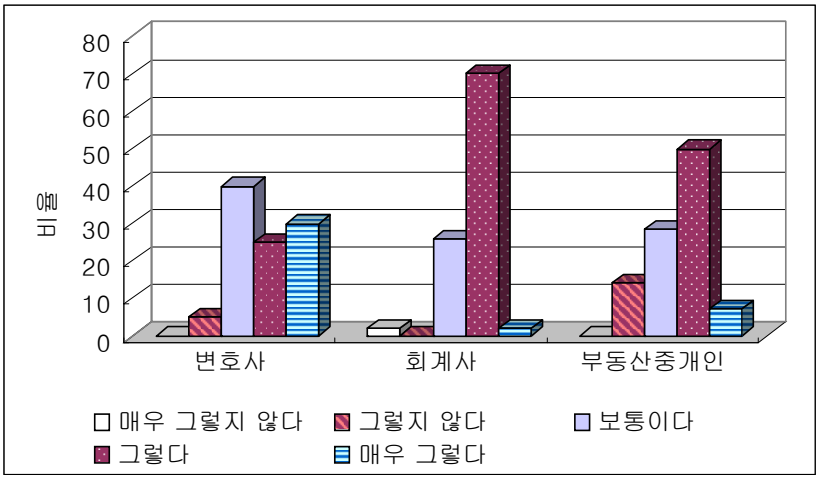
1) 국내의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

국내의 자금세탁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직종과 관계없이 모두 위험성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위험성 정도가 높다고 답변한 경우는 변호사 55%, 회계사 72%, 부동산중개인 57%로 나타났으며, 낮다고 답변한 경우는 변호사 5%, 회계사 2%, 부동산 중개인 14%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로 회계사 2%, 부동산 중개인 7%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국내의 자금세탁 발생위험에 관한 시각

(단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에 걸쳐서 국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높았다. 30대 중 73%가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가장 낮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58.%)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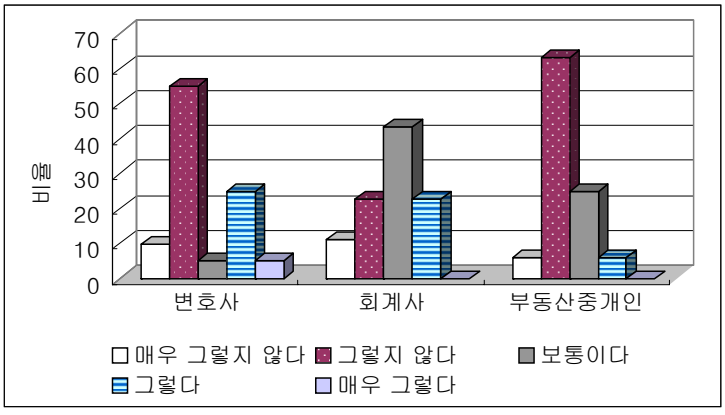
종사기간이 많을수록 국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년 이상(69%), 10～20년(69%), 5～10년(61%), 1～5년(53%) 순으로 나타났다.

2) 고객의 자금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평가

본인의 업무수행 중이나 다른 동료로부터 들은 내용 중 고객 자금이 자금세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상집단 모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69%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6%만이 자금세탁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호사, 회계사는 각각 65%, 34%가 자금세탁 관련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자금세탁 관련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경우는 변호사 30%, 회계사 23%, 부동산중개인 6%로 나타났다. 대상집단 모두 국내 자금세탁의 위험성 정도는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자금세탁에의 관련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3-5. 고객의 자금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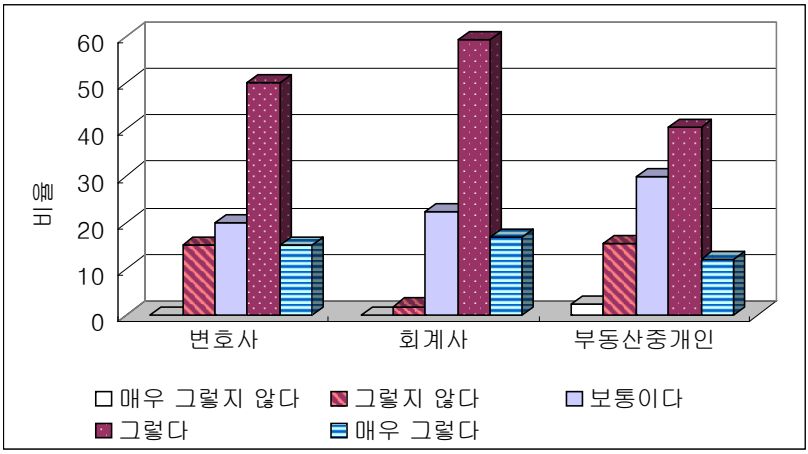


3) FATF 40 권고사항의 국내 도입에 관한 시각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들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권고사항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국내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부정적인 응답은 부동산중개인 17%, 변호사 15%, 회계사 2% 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 3-6. FATF 권고사항의 국내 도입에 관한 시각

(단위: %)



전문직 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국내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종사기간이 20년 이상(77%), 10~20년(76%), 5~10년(71%), 1~5년(53%), 1년 이하(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세 이상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가 40세 미만의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등 3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FATF의 권고사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신원확인과 기록보존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아직 다수의 전문직 종사자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자금세탁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나라가 FATF의 권고를 이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가 이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결과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ATF 권고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 방향
2. 직종별 도입방안

1. 도입 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Big Bang Approach)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등은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의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89]하고 이를 제도 도입의 기초로 삼고 있다. 또한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내에서도 의무이행의 수준을 달리하고 의무이행을 면제하기도 한다.

한편 영국은 EU AML Directive(2001)에 의거하여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NCIS의 자금세탁 담당부서의 규모, 혐의거래보고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혐의거래보고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에서는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부문에 따라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관련 이해단체 및 대상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이해에 기초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식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각 업종대표단체와의 협력을 우선시하여 업종대표단체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의 형식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각 직종에 대한

89) SAR Activity Review 등이 있다.

위험성 분석을 토대로 하여 위험수준에 알맞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도의 적용시기와 범위도 해당 업종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축적이고 유연성있게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해외사례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해서는 2개국(영국, 호주), 회계사에 대해서는 3개국(영국, 호주, 캐나다), 카지노는 4개국, 부동산중개인은 3개국(영국, 호주, 캐나다), 귀금속상에 대해서는 3개국(미국, 영국, 호주)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90]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의 비금융업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경우 『검찰공보』와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에 기초한 43개 자금세탁 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자금세탁 인지가능성이 변호사 2건, 회계사 4건, 부동산중개인 4건, 카지노 2건으로 나타났다. 귀금속상의 경우 조사대상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내 귀금속 거래의 큰 부분이 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자금세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내의 경우도 외국과 동일하게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이 자금세탁에 연루되거나 이를 인지할 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자금세탁 발생 위험성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의 업무범위에서 자금세탁 위험은 낮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90) 호주는 변호사, 회계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이나 각 주(State and Territory) 차원에서 관리·감독되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1차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외국사례의 경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대상자들의 반대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가장 주요한 반대 논거는 직업상 고객의 비밀유지의무에 있다. 한편 FATF의 권고는 변호사의 직업상 고객의 비밀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FATF 권고 16항). 직업상의 비밀 또는 법률직의 특권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은 소송과 관련하여 고객을 변호, 대변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례 분석결과 43건 중 2건에서 변호사의 연루 및 인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설문결과 변호사의 업무 중 법률자문, 소송활동 등에서 자금세탁 인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공증업무, 문서작성이 언급되었다.

1) 업무포괄범위

외국사례와 국내의 자금세탁 위험을 감안하여 변호사의 경우 FATF의 권고 1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

- 부동산 매매시
- 고객의 증권, 현금 및 자산 관리시
- 고객의 은행계좌, 저축 및 증권 계좌 관리시
- 회사의 설립, 운영 및 관리에 관여시
- 법인의 설립, 운영 및 관리와 비즈니스의 매매에 관여시

소송활동, 법률자문 등 고객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영역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면제하고 공증업무, 문서작성 등 일반적인 법률활동 수행시에는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수행한다.

2) 의무부과내용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기본요소인 고객주의의무, 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를 실시한다.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실거래자를 파악하며 거래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객비밀보호의무와 상치하지 않는 분야의 업무에 대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한다.

3) 시행방식

변호사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사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협회가 제정한 직무, 법원, 의뢰인, 보수 등에 관한 「변호사윤리장전」을 모든 변호사가 철저히 준수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제도 등을 두어 변호사가 업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하는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징계하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보전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전국 지방변호사회별로는 변호사윤리 위반 여부를 감찰하는 감찰위원제도를 두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벌임으로써 자체 정화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91]

따라서 제1단계에서는 변호사협회가 시행주체가 되어 변호사협회 지침에 의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포함하는 한편, 매년 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 연수교육과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인식을 제고한다. 윤리장전에 의거해 구체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혐의거래보고를 1차적으로 변호사협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협회내에 기존 조직을 이용하거나 적절한 조직을 신설하여 회원들의 혐의거래보고를 접수하고 1차 검토 후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제2단계에서는 금융거래보고법 등의 개정을 통한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법제화 추진을 고려한다.

나. 회계사

외국사례의 경우 회계사는 영국, 호주, 캐나다 3국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미국도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의무화,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 보고의무화, 자금세탁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사의 인증의무화를 하고 있다.

국내 사례분석 결과 43건 중 4건에서 회계사의 인지 가능성이 발견되어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사의 업무 중 경영자문, 세무업무, 감사활동 등

91) 대한변호사협회 website http://www.koreanbar.or.kr/info/01_04.asp에서 인용.

에서 자금세탁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회계사는 자금의 흐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연루되거나 인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 업무포괄범위

FATF의 권고 1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

- 부동산 매매시
- 고객의 증권, 현금 및 자산 관리시
- 고객의 은행계좌, 저축 및 증권 계좌 관리시
- 회사의 설립, 운영 및 관리에 관여시
- 법인의 설립, 운영 및 관리와 비즈니스 매매에 관여시

기타 일반적인 경영자문, 세무업무, 감사활동 수행시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한다.

2) 의무부과내용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기본요소인 고객주의의무, 기록보존과 혐의거래보고를 실시한다.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실거래자를 파악하며 거래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한다.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보고의무화, 자금세탁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사의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3) 시행방식

회계사는 자금의 관리 및 흐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종으로 자금세

탁방지의무 이행을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적인 수준의 직업윤리 기준 준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전 회원이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윤리기준위원회 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인회계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에 관한 업무와 공인회계사 징계에 대한 업무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다.[92)]

제1단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시행주체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강령에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마련한다. 이 지침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 혐의거래보고는 1차적으로 공인회계사회내 윤리위원회 등의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의 1차적인 검토 후 정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계사의 능동적 역할을 주문하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계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고려한다.

다. 카지노

FATF 40 권고(2003)에 따르면 카지노(인터넷 카지노 포함)에 대해 3천

92) 대한공인회계사회 website http://kicpa.or.kr/index.jsp에서 인용.

USD/EUR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외 사례조사 결과 카지노의 경우 사례조사대상 4개국 모두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사례연구 결과도 카지노가 자금세탁에 빈번히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카지노는 자금세탁 관련 사건 43건 중 2건에서 인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카지노산업의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상 자금세탁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금세탁의 주요한 loophole로 판단된다. 또한 경마 등 기타 도박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업무포괄범위

카지노의 출납업무와 환전업무에 대해서 1일 기준 거래총액이 기준액(3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2) 의무부과내용

고객주의의무, 거래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한다. 3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이행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한다.

3) 시행방식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국내 관광 및 카지노업계의 진흥, 발전을 위해 1995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문화관광부에 의해 승인된 법인체이다. 이 협회의 주요 업무

를 살펴보면 카지노업계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 관광업계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카지노업무의 개선, 지도 및 감독, 카지노 종사원의 교육 주관,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등이다.[93]

카지노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지침을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제정토록 한다. 이 협회의 지도감독기능과 교육기능을 활용하여 카지노업계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제도 정착을 통해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1차적으로 고객주의의무, 거래기록보존, 협의거래보고 등을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도입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내 카지노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 부동산중개인

해외사례의 경우 부동산중개인은 3개국(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완화된 형태로 시행 중이다. 미국은 부동산업계의 이중보고 문제, 비용문제 제기에 따라 시행되더라도 완화된 형태가 될 예정이다.

국내 사례분석 결과 43건 중 4건에서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 인지 가능성이 발견됨으로써 자금세탁이 비교적 높게 연관된 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은 중개업무의 성격상 고객 확인 및 실거래자 파악, 거래기록 보존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협의거래보고의 도입이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93) http://www.koreacasino.or.kr에서 인용.

1) 업무포괄범위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 매매 및 알선, 명의신탁과 관련된 업무, 외국 소재 부동산 매매 알선, 매매대금의 취급, 증여세 및 양도세 관련 업무, 분양권 매매 및 전매, 고가의 부동산 거래시 일정 기준액(5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의무부과내용

부동산중개인은 고객주의의무, 거래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이행한다. 5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거래자를 파악하며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거래보고를 이행한다.

3) 시행방식

1차적으로 직종협의회를 통하여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1986년 3월 5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 단체로서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94] 그러나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는 상기에서 언급된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등의 직종 협회와는 달리 지도감독기능, 교육기능, 공공기관 위탁업무 수행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감독은 정부기관이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94)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website http://www.nareb.or.kr 참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주의의무, 거래기록 보존과 혐의거래보고를 위한 표준서식 제공 및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귀금속상

귀금속 및 보석의 거래는 자금세탁의 배치 및 통합단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괴와 다이아몬드는 자금세탁에 자주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테러자금 조달에도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EU 지침은 1만 5천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 사례조사의 경우 귀금속상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시행 예정이다.

국내 사례분석 결과 제공된 판례에서는 귀금속상의 자금세탁 연루 및 인지 가능성에 대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 귀금속 거래의 많은 부분이 밀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금세탁의 위험이 매우 큰 분야로 분류된다.

1) 업무포괄범위

국제기준에 따라 귀금속상의 거래 중 1,5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

2) 의무부과내용

고객주의의무, 거래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를 이행한다. 1,5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혐의거래보고를 이행한다.

3) 시행방식

귀금속 및 보석 관련 업종 단체로는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서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사)한국지금협회, (사)다이아몬드협회,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사)한국귀금속디자인협회, (사)한국보석협회, 한국보석전문감정원협의회, 한국진주협회, 귀금속가공협회 등 여러 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특히 한국귀금속관련단체장협의회는 7개 관련 단체로 구성, 귀금속보석공정거래위원회, 납세자위원회, 유통질서위원회 등을 두어 귀금속 및 보석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귀금속 및 보석업계에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장협의회 등 주요 업종대표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업종대표단체와 협의회를 통해 국내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필요시 연수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귀금속 및 보석 산업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이행지침을 제시하고 각종 협회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내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전문직과 비금융업이 연관된 국내의 자금세탁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조사 결과 해외 주요국들은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해 고객주의의무,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호주, 영국은 시행 중이나 미국, 캐나다는 관련 종사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이중보고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과범위와 내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전문직종사자와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의 위험성 정도를 평가하고 비금융업 및 전문직이 연루된 국내의 자금세탁 사례를 살펴보았다. 1995~2000년까지의 검찰의 사건기록을 모은 각 연도별 『검찰공보』 및 『실무속보』,[95] 서울지방검찰청이 발행한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에 기록된 총 710건의 사건 중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및 수법이 나타난 사건기록은 43건이었다.

자금세탁 관련 사건기록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전제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횡령 11건, 재산해외도피 10건, 뇌물 9건, 사기 9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네 가지 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총 43건의 자금세탁범죄 중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가 관련된 범죄는 10건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2건, 회계사 4건, 카지노 2건, 부동산중개인 4건 등이 자금세탁

95) 『검찰공보』 및 『실무속보』는 대검찰청에서 매달 발행하던 문건으로, 1998년 이후 『검찰공보』가 『실무속보』로 대체되어 발간되었으며, 2000년 8월 이후의 사건기록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전산화되어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않는다.

에 연루 및 관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3개 직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FATF의 권고사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객신원확인과 기록보존은 이미 다수의 종사자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자금세탁 발생위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자금세탁의 위험이 크다고 대답하였고 우리나라가 FATF의 권고를 이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가 이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 결과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능케 한다. 또한 FATF 권고의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는 해당 직종의 위험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의 위험, 그리고 자금세탁이 미치는 해당 직종의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업종협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에 대해 의무부과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문직종인 세무사, 비금융업의 경마 관련 도박업, 자동차, 배 등의 고가물품 거래업, 예술작품 및 골동품 등의 거래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관세청. 2004. 7. 21. 보도자료.

국세청. 2003. 6. 11, 2003. 11. 8. 보도자료.

검찰. 2004. 3. 17, 2004. 5. 25, 2004. 7. 28, 2004. 9. 9, 2004. 10. 20. 보도자료.

검찰공보, 제90호(1990. 6. 1), 제 95호(1990. 11. 1), 제165호(1996. 9. 1), 제114호(1992. 6. 1), 제180호(1997. 12. 1), 제200호(1993. 3. 31).

금융감독원. 2002. 3. 14. 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2002. 11.『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_____. 2003. 11. 27.「자금세탁방지 워크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2.「FATF 40 개정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방안」.

대법원 판례.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도중진. 2002.「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강우. 2000.「기업범죄의 현황 및 정책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지방검찰청.『'99 특별수사 사례집』.

『실무속보』, 제200호(1999. 3. 31).

안형도 外. 2000a. 12.『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0b. 12.『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운영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3. 12.『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현. 2002.「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1999.「90년대 돈세탁: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2003. 12.『2002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영문자료]

Australian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03. "Issue Paper - Anti - Money Laundering R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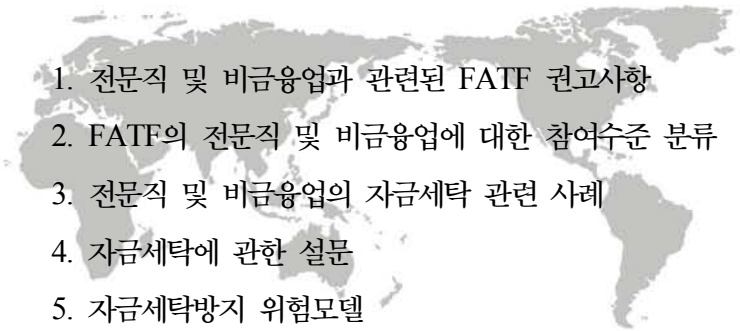
ACPR & AUSTRAC POI Steering Committee. 2004. "Discussion Paper - Standardisation of definitions of identity crime terms."

Banking Today. 2004. *Journal of the Hong Kong Institute of Bankers*. (May/June)

FATF. 2003. “The Forty Recommendations on Money Laundering.”
_____. 2005. 10. 14. “Third Mutual Evaluation Report on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FinCEN. 2003. “Money Laundering Prevention - An MSB Guide.”
_____. 2003. 2. “The SAR Activity Review - Trends Tips & Issues.” Issue 5.
_____. 2003. 11. 6. “The SAR Activity Review - Trends Tips & Issues.” Issue 6.
FINTRAC. 2003a. “Guidelines.”
_____. 2003b. “FINTRAC Standard Batch Reporting Specification.”
_____. 2004. *Annual Report 2004*.
HM TREASURY. 2004. 10. “Anti-Money Laundering Strategy.”
NCIS. 2003. “UK Threat Assessment - The threat from serious organised crime.”

[웹사이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노컷뉴스 홈페이지: http://www.nocutnews.c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대한민국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earch.assembly.go.kr/law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mk.c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서울신문 홈페이지: http://www.seoul.co.kr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fki.or.kr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c.re.kr

부 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12. 권고사항 5조, 6조 및 8조 내지 11조의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에도 적용된다.

a) 카지노(Casinos)
- 고객이 일정 기준액(3천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행하는 경우

b) 부동산중개인(Real estate agent)
- 고객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한 경우

c) 귀금속상(Dealer in precious metals and dealers in precious stones)
- 고객과 일정 기준액 이상(1만 5천 달러)의 현금거래를 행하는 경우

d)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Lawyer, notaries, other independent legal professionals and accountant)
- 고객을 위하여 다음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prepare for or carry out).
  - 부동산 매매
  - 고객의 자금・증권 등 기타 자산 관리
  - 은행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의 관리
  - 회사 설립, 경영, 관리에 관여
  -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설립・운영・관리 및 사업체의 매매

e)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
- 고객을 위하여 용어설명(Glossary)에 나열된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16. 권고사항 13조 내지 15조 및 21조는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적용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a)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는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권고사항 12조(d)에서 나열된 활동과 관련 있는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경우(engaged in)에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각국은 회계감사업무(auditing)와 같은 회계사의 나머지 직업활동에 대해서도 혐의거래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장한다(strongly encouraged).

b) 귀금속상은 고객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참가하는 경우(engaged in)에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한다.

c)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권고사항 12조(e)에서 나열된 활동과 관련된 거래에 참가하는 경우에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한다.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는 독립적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획득한 정보가 직업상 비밀 보장 또는 직업적 특권에 해당되는 경우(professional secrecy or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에는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0. 각국은 변호사, 회계사 등 앞서 언급한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 외에도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이 있는 사업자나 전문직에게 FATF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자금세탁 위험이 적고 현대적이고 안전한 자금관리기법(techniques of money)의 발전을 장려하여야 한다.

24.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은 다음에 규정된 규제 및 감독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a) 카지노는 그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제 및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카지노는:
-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 기관은 범죄자나 그 관련자가 카지노를 지배하는 실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적·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계기관은 카지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b) 각국은 카지노외 기타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체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 이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으나 만약 그 회원들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sation: SRO)이 있다면 이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25. 관계기관은 금융기관 및 특정 전문직, 비금융업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조치와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 및 보고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확립하고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부록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FATF는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업 종사자들이 FATF 권고사항 12조에서 규정한 고객주의의무 및 기록보존의무와 16조에서 규정한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할 상황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부표 1.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구 분	권고사항 제12조			권고사항 제16조		
	적극 관여 (engage in)	참여 (involve in)	준비 또는 수행 (prepare for or carry out)	적극 관여 (engage in)	참여 (involve in)	준비 또는 수행 (prepare for or carry out)
카지노	○					
부동산 중개인		○				
귀금속상	○			○		
변호사, 법무사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			○	○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	○		

자료: FATF(2003), "The Forty Recommendations on Money Laundering."

부록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사례 1: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

- 피의자 안○○는 북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횡령 범행으로 모은 돈으로 인천 북구 계산동 소재 주택, 인천 북구 부평동 동아아파트 1채, 전답, 임야 등 합계 18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동인은 부천 중동지구에 소유하고 있던 상속 농지가 토개공에 수용되면서 큰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용재산만으로는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수용시 받은 보상금과 수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안○○의 금융자산을 내사한 결과, 건영종합새마을금고에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계좌를 개설, 8억 1천여만 원 상당을 예금하여 두었고, 동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부평지점, 한미은행 부평지점 등에 가·차명의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41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었는바, 대부분 횡령한 세금을 예금한 것을 보여짐.
- 횡령금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타인에게 약 4억 원을 빌려주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대지 213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원홍환경(주)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 관찰 가능성: 부동산중개인

(『검찰공보』 제145호, 1995년 1월 1일)

사례 2: 청산법인 부가가치세 횡령 관련 세무공무원 억대뇌물 수수 사건

- 부도난 건설회사인 (주)○○건설의 상무인 박○○이 국제○○건설로부터 김해시 삼방동 18층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의 공동시행부분 양도대금조로 받은 청산자금 67억여 원 중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1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함. 피의자 진○○은 경남 부산 세무서 법인세과 소속 담당계장으로, (주)○○건설이 낼 부가가치세 11억 3천여만 원 중 3억 3천여만 원만 신고토록 교사하고, 법인 실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뇌물 1억 원을 받고, 국민은행 토성동지점 차장 피의자 허○은 부가가치세 영수증 2장 중 액면 8천여만 원 상당 1장을 10억 8천여만 원 상당으로 변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명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해주었음.

- 또한 공인회계사무소 사무장 배○○은 적극적으로 가짜 세무자료를 만들어 청산법인의 탈세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사례비를 받아 챙김. 이는 현재 세무서에 신고되는 세무자료는 회계사무소에서 거의 임의로 만든 허위자료이고 이러한 사실을 세무서에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무소와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이를 눈감아주는 실정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그러므로 세무회계사무소는 탈세를 적극 방조하는 역할을, 세무서는 탈세를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짐.

・연루 및 관찰 가능성: 회계사

(『검찰공보』 제148호, 1995년 4월 1일)

사례 3: 영등포 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 피의자 고○○는 영등포 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영등포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비를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원들 몰래 조합비를 유용하여 ○○건설 주식회사라는 사실상 1인 회사를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매수한 건축부지를 마치 회사가 매수한 것인양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후 회사 앞으로 등기를 하여 조합원들의 땅

을 가로챈 다음 한전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한전 측에 변전소 부지로 분양하여 6억 3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김.

- 피의자 고○○는 조합원들의 부지를 빼돌려 이득을 착복한 외에도 조합원들 몰래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사업에도 손을 대 은밀히 추진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검은 속셈을 은폐하고 조합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서류를 조작해 놓는 치밀함을 보임.

・관찰 가능성: 변호사

(『검찰공보』 제151호, 1995년 7월 1일)

사례 4: 신협직원 고객예탁금 거액 횡령 사건

- 신용협동조합 입출금 결재업무를 담당하던 대리 2명과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 2명이 공모하여 예탁하러 온 조합원의 자립예탁금 통장에는 정상적으로 예금된 것인양 기재하여 교부한 후 동인의 해당 거래원장에는 예금사실을 누락시키거나 미리 조합원들의 도장을 백지예금 지급청구서에 찍어두었다가 필요시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9억 9천만 원 상당의 조합 돈을 함부로 빼내어 생활비, 유흥비,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소비함.

・관찰 가능성: 부동산중개인

(『검찰공보』 제151호, 1995년 7월 1일)

사례 5: 서남대 총장의 등록금 횡령 사건

- 서남대 설립자 이○○은 5개 학교법인과 법인 산하 8개 학교를 경영하면서 1995년 7월경부터 1997년 4월경까지 각 학교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등 426억

2,4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남광병원과 적십자병원 인수 및 운영자금,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광주 대산동, 삼거동, 진곡동 소재 부동산 구입자금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관찰 가능성: 부동산중개인

(『검찰공보』 제175호, 1997년 7월 1일)

사례 6: 신○○그룹 외화도피 사건 수사

- 신○○그룹 최○○ 회장과 (주)신○○ 전 대표 김○○은 고○○과 공모하여 1996년 6월~1997년 6월 미국령 바하마 소재 '스티○○○○○○서널'사로부터 석유정제시절을 수입하여 사하공화국 '골드○○'사에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여 수출한 것인양 허위 무역서류를 꾸며 조흥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조로 2,829만 8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9회에 걸쳐 도합 1억 8,750만 달러의 수출금융을 편취하고 위 같은 기간 동안 '스티○○○○○○서널'사로부터 석유정제시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흥은행을 통해 체이스맨해튼은행 뉴욕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이스맨해튼은행 뉴욕지점에 개설된 '스티○○○○○○서널'사 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2,484만 2,800달러를 송금하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스티○○○○○○서널'사 계좌로 1억 6,592만 달러를 송금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킴.
- '스티○○○○○○서널' 대표 고○○은 금융전문가로 미국에서 회계사로 활동 중이고 최○○이 허위서류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편취한 뒤 미국계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아이디어는 금융전문가인 고씨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연루 및 관찰 가능성: 회계사

(『실무속보』 제200호, 1999년 3월 31일)

사례 7: ○○그룹 탈세사건

- (주)○○항공 대표이사 회장 조○○, 명예회장 조△△은 공모하여 1993~98년간 항공기 구매시 엔진제작사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중 국내반입분 1,161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하여 사주 일가의 개인세금 납부에 유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273억 원을 탈세하고 391억 원의 결손금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밝혀졌고, (주)○○해운 사장 조◎◎도 1995~98년간 63억 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11억 원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졌음.
- 1994~98년 미국 보잉사에서 13대, 프랑스 에어버스사에서 5대의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그 항공기에 미국 P&W사가 제작한 엔진을 장착해주는 대가로 엔진송장 발행가격의 30~44%에 해당하는 2억 7,7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주)○○항공 명의 외화당좌계좌로 송금받아 국내에 반입, 그 중 1,685억 원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변칙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주인 조△△, 조○○ 일가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액수만큼 수입이 감소된 것처럼 과세표준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273억 1,317만 9,368원을 탈세하고 388억 2,310만 6,934원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함.
- 1994~95년 실제 구입하지 않은 항공유 39억 8,341만 3,340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가공계상하고 법인세 등 12억 4,563만 4,677원 탈세하는 등 국세청 고발액 1,685억 원의 탈세사건임.

・연루 및 관찰 가능성: 회계사

(『실무속보』 2000년 1월 5일)

사례 8: (주)○○텍의 수출입위장 금융사기 및 M&A 관련 비리 사건

- 피의자 홍○○는 부실한 상장기업인 ○○제지공업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1997년 8월경 홍○○가 (주)○○원종합무역상사 대표이사 이○○를 만나 수출대행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그해 9월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나 10월, 11월에는 재미교포들에게 월 20만 달러를 주기로 하고 반도체칩 등을 빌렸다가 다시 반환하는 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이를 수출입으로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도합 1,015억 원을 빼냈음.
- 금융사기로 빼낸 돈 중 200여억 원을 주고 (주)○○리자 등 대부분의 계열사를 인수하고, 300억 원은 빼돌려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이 사건은 부실한 상장기업을 인수하여 이를 매개로 수출금융사기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위 돈을 이용하여 전형적인 기업사냥을 하여 인수한 기업들로부터 대출, 가지급명목 등으로 돈을 개인소유로 빼돌리고 궁극적으로 기업을 부도나게 하려는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
- 피의자 홍○○는 프랑스에서 다년간 식당업에 종사하다가 기업 M&A, 펀드관리를 십수 년간 전공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귀국하여 (주)○○텍을 인수, 위장수출입을 통하여 재산을 모으려다가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내 유수의 국제금융 전문 변호사, M&A 전문가 등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 및 금융 관련 전문가로 포장한 것으로 보임.

・관찰 가능성: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 1999, 서울지방검찰청)

사례 9: 슬럿머신 대부 정○○ 거액재산 국외도피 사건

- 피의자 정○○은 1991년경 설악산 카지노 영업시 일본인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일본에서 수금한 160만 달러를 미국으로 밀반출하는 등 1991년경부터 1996년경 사이에 미국 및 필리핀으로 610만 달러의 재산을 밀반출하여 미국 L.A.에 호화저택을 구입하고, 마닐라 슬라이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호텔과 자택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포카와 마작 등 도박한 사실이 밝혀짐.

・연루 및 관찰 가능성: 카지노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 1999, 서울지방검찰청)

사례 10: 까르푸 관련 340억원 상당 스위스 밀반출 사건

- 서귀포 ○호텔 카지노 전무이사인 피의자 김○○은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롤링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1997년 5월 부터 1998년 2월 2일까지 사이에 340억 7천만 원을 아르헨티나인 헥○가 홍콩으로 환치기하여 스위스은행 계좌로 밀반출하는 것을, 송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계좌송금을 도와줌.

・연루 및 관찰 가능성: 카지노

(『1998년 특별수사사례집』 1999, 서울지방검찰청)

부록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자금세탁방지의무에 관한 설문[96)]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2003년 6월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권고사항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문직 및 비금융업(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주의의무(고객확인 및 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EU Directive(2001. 12)를 통하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등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대상 및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문직종사자 분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59세 ⑤60세 이상

2. 전문직에 종사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 )

①1년 미만 ②1~5년 ③5~10년 ④10~20년 ⑤20년 이상

96)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부록 4]의 설문은 변호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3. FATF 40(2003) 권고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우리나라의 금융정보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인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국내의 경우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만약 그 고객이 대리인인 경우 실거래자를 확인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고객과 실거래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본인의 업무수행 중이나 다른 동료로부터 들은 내용 중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변호사가 자금세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

까? (예: 소송활동, 법률상담, 문서작성, 공증업무 등)

( )

11.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을 경우 어디에 보고하시겠습니까?

① 경찰 ② 관련 금융기관 ③ 금융정보분석원 ④ 보고하지 않음

⑤ 기타( )

12.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들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가 권고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권고사항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만약 국제적 기준에 맞게 권고사항을 적극 실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전문직의 비밀유지, 보고시 비용 발생, 작은 사업규모 등)

( )

◆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락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혁 연구원

email: jhkim@kiep.go.kr tel: 02-3460-1193

부록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97]

국내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모두 고유의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의 전문직 및 비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도입시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되, 각 전문직에 대하여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수립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위험성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은 지리적 요건 및 국가 위험, 사업 및 사업실체 위험, 제품 및 거래 위험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의 위험모델은 계좌 개설시 이행되는 고객주의의무와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포함한 감시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 위험기반 접근법의 중요성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효용성은 첫째, 각기 다른 고객의 유형, 고객의 규모, 계좌의 종류를 고려한 고객의 확인 및 검증절차에 적합하다. 둘째, 위험성 정도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조기에 위험성이 높은 계좌를 발견하고 거래를 감시(monitoring)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보통 거래형태와 다른 거래가 행해질 경우 위험성 정도가 높은 계좌에 대해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시한다. 셋째, 주기적인 고객정보의 갱신을 통해 계좌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고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포함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면서 감시활동 수행인원을 적절하게 할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을 불문하고 일관된 방

97) Banking Today(2004), *Journal of the Hong Kong Institute of Bankers*. (May/June)

법으로 계좌에 대해 위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2. 위험의 분류

위험에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요건 및 국가 위험, 사업 및 사업실체 위험, 제품 및 거래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가. 지리적 요건 및 국가 위험

적절한 자금세탁방지대책을 갖추지 못한 채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국가의 고객을 확보한 기업은 강도 높은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과 감시절차의 필요성이 고려된다.

- 주요 교환수단이 현금인 국가
- 공공민간부문의 극심한 부패로 정치체제가 불안정한 국가
- 마약 생산국 또는 마약 우범국
- 부적절한 자금세탁방지대책을 가진 국가

지리적 요건과 국가위험모델은 다음의 정보에 기초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취약한 정도에 따라 각국을 상·중·하로 구분한다.

-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FATF 블랙리스트 국가
- '자금세탁 주요 관찰 국가'를 지정한 USA Patriot Act Section 311

- OECD 블랙리스트
- 마약 생산국 및 마약 거래국에 관한 USA 리스트
- 테러 지원국가에 관한 USA 리스트
- 국가자금세탁 위험 및 테러리즘에 관한 미국정부 연례보고서
- 은행의 국내 위험관리평가

나. 사업 및 사업실체 위험

위험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자본집약적 사업은 불법행위에서 얻어진 자금을 정당한 거래행위에서 얻어진 자금으로 그 출처를 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직종사자들은 자금세탁의 수단과 계획 수립에 있어 더욱 용이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석상, 자동차・보트・비행기 딜러 또한 자금세탁자들이 매도・매수를 통하여 불법수익금을 정당한 거래로 포장할 수 있게 한다. 수출입 회사 또한 허위 무역장부를 작성하여 자금을 불법으로 은닉할 수 있다. 특히 카지노, 도박, 브로커, 딜러 등은 이미 자금세탁자들이 선호하는 수단으로 대량의 현금이 거래되는 이 사업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사업실체 위험은 개인이나 기관이 테러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위험과 적절한 통제 없이 정치적 주요 인물과 거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 제품과 거래 위험

제3의 자금이 무제한으로 유입되거나 자금이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로부터 일정한 주기로 지급될 때 상품 및 거래 위험이 가장 높다. 고(高)위험 상품은 수표장, telegraphic transfers, SWIFT,[98] CHAPS[99] 등 제3자나 다른 매개로부터의 자금

위탁을 통한 자금전환장치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회사와 개인의 유통계좌들은 제3의 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 자금 제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고위험상품에 해당한다. 이 중 개인은행계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 자금세탁업자들이 유한책임회사나 역외신탁회사, 익명성이 강해지고 있는 특별금융매체(special purpose vehicles), 지명계약(nominee arrangement) 등과 같은 회사조직이 배후에 있다면 위험은 더 높아진다.

낮은 위험성 상품들은 투자자가 오직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만 자금 송금이 가능하거나 투자자 명의 계좌로 자금의 재송금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때 제3에 의한 자금의 송수신은 불가능하다.

영국과 같은 선진 금융센터에서는 위의 특징들이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소매신용사업, 자산금융회사 등 각 금융부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투자신탁업과 생명보험은 보호적 자금조달 및 지급규칙(protective funding/payments rules)을 갖추지 못하였고, 자금세탁 발생 위험도 높다.

은행 직원들은 반드시 규정된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들의 계좌환경이나 사업환경이 적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3. 위험기반접근법의 활용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거래를 맺을 때에는 위와 같이 자금세탁 범죄와 연루될 모

98)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99) 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에서는 일부 선도적인 미국 은행지점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에 관해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금융기관은 적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법인고객의 비즈니스 프로파일을 검증, 고위험 고객들을 가려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위 사례와 같은 지속적·종합적인 자금세탁 위험평가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for Professionals and Non-Financial Businesses in Korea

Hyungdo Ahn and Jonghyuk Kim

The FATF's Forty Recommendations, which have been endorsed by more than 130 countries, are widely accepted as the leading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standards. The Recommendations recognize that certain types of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als are vulnerable to money laundering, and ask countries to consider applying the Recommendations to the financial activities of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als. FATF Typologies reports have regularly referred to the increasing role played by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als in money laundering schemes in recent years.

After introducing anti-money laundering laws in 2001, Korea have has taken steps to extend the reach and breadthwidth of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and systems to increase its their effectiveness. Korea will introduce a Currency Transactions Report and enhance Customer Due Diligence for higher risk categories beginning Jan 1, 2006.

However, these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do not apply to professionals and non-financial businesses in Korea. The professionals may assist the money launderer by acting as financial intermediaries or providing expert advice. And they may also be involved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companies and other legal entities or arrangements, thus providing other services that are useful to the money launderer.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to for professionals and non-financial businesses for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cases from the Korean prosecutory prosecution authorities. Even though there exists the limitations that the recent cases are not available, the study finds many money laundering cases related with to professionals and non-financial businesses in Korea. In addition,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are performed to obtain the opinions of professionals and non-financial businesses. Lastly, the study proposes the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for professionals and non-financial businesses in Korea.

KIEP 발간자료목록 (2004~2005. 12)

■ 정책연구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 김원호 외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 외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남영숙 외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방호경 외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 최낙균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윤창인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이창수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윤미경·윤창인·이상승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양두용 외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 김흥종 외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 정인교 외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강문성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이홍배 외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지만수 외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 홍익표 외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 안형도·오용협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전일수·홍석진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이상학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이형근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윤창인·이재협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남상열 외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흥종·이창수·김균태·강준구·박순찬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05-11 최근 해외자본 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백승관·신관호·전종규
05-12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오용협·김은경
05-13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환율 중심의 안정화 정책의 검토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05-14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 율·왕윤종·오쿠다 사토루·정재완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정승호·윤정혁·우상민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정성춘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동용승·홍익표·이재영·이종운·정형곤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 유재원·임혜준 편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김종혁

■ 지역연구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박복영
04-02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 김흥종·이철원·김병연

■ Policy Analyses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Hongshik Lee, and Junkyu Lee
05-03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 정책토론회시리즈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홍수연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찬 외
04-02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 김원호・권기수・김진오
04-03 ASEAN + 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협 현황
04-04 폴란드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폴란드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04-05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 김흥종・김균태
04-06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 강준구・박지현
04-07 수입선 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김정곤・박혜리
04-08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박지현
04-09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강준구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 엄부영・강정실
04-11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 최낙균 외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강정실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홍수연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 김흥종 · 김균태 · 오형범 · 나수엽 · 하유정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권식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 · 강준구 · 박지현 · 김정곤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편
05-09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 송영관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창수 · 김우영 · 박순찬

■ 세미나자료모음

04-01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oon Hyung Kim and Chang Jae Lee
04-02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oon-Kyung Kim and Chang Jae Lee
04-03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 Yonghyup Oh, Deok Ryong Yoon, and Thomas D. Willett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Reconsid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흥종 · 박성훈 · 페터 가이 편

■ APEC Study Series

04-01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 Assessment and New Challenges / Seok-young Choi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 OECD Study Series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 Doo-Yull Choi

■ Discussion Papers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ch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ng Yoon

04-02 A Critical Assessment of India's Banking Sector Reform / Tae Hwan Yoo

04-03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 Young-Sun Lee and Deok Ryong Yoon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 Working Papers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rphanides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4-03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 Sungil Bae and Tae Hwan Yoo

04-04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04-05 Expans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04-06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04-07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 Wanjoong Kim and Terrence Kinal

04-0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vidence from Geographical Features of International Consumption Risk Sharing / Yonghyup Oh

04-09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 Jong-Woon Lee

04-10 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04-11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FTA Partners / Chan-Hyun Sohn and Hyun-Hoon Lee

04-1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ast Asia / Soon-Chan Park, Hongshik Lee, and Mikyung Yun

04-13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 Sung Jin Kang and Hongshik Lee

04-14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Zhaoyong Zhang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 Vivek Jayakumar, Tae Hwan Yoo, and Yoon Jung Choi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04-01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 Zhaoyong ZHANG

04-02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 Richard E. Baldwin

04-03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 Kiyotaka Sato

04-04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04-05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Lee-in Chen Chiu

04-06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 Yin-Wong Cheung

04-07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CHEN Hong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 Fran□oise NICOLAS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 Sumio Kuribayashi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 James H. Chan-Lee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의 새로운 구상 / 임 명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Simon Hix and Hae-Won Jun

■ 지역리포트

04-01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박영호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철원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박영호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 박영곤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영 경제협력의 과제 / 김흥종·김균태
04-06 일·ASEAN FTA 추진현황과 전망 / 권경덕·김은지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이재영·신현준·김선영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배희연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獨 경제관계 / 김흥종·김균태·Bernhard Seliger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성춘

■ 지역연구회시리즈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김은경·김흥종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 김흥종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이종윤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장형수·정여천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 박승찬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미무라 미쯔히로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 유장희·김은미

■ 단행본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 이철원·정후영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 이경태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최낙균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 • 강준구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 • 김관호 • 원신희
-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 • 이성봉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 이경태 편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조명철 편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 최낙균 • 윤창인 • 송유철 • 이성봉 • 김준동 • 양준석 • 이종화 • 손찬현 • 강문성 • 박순찬 • 윤미경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rean Crisis and Recovery / 김세직 • David T. Coe eds.
-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 KOPEC • KIEP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안충영 편
- Toward a Transparent and Globalized Economy / 안충영 편
- 한 • 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 김원호 편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2003/04 북한경제백서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 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 한 •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 • 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 • 외교통상부
- 제9차 한 • 중남미 협력 포럼 / KIEP • 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종 • 손병해 공편저

安炯徒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現, E-mail:hdahn@kiep.go.kr)
著書 및 論文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 연구와 시사점』(공저, 2003)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공저, 2004) 외

金鍾赫
미국 University of Houston at College Park 경제학 석사
미국 East West Center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jh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FATF 40개 권고사항 개정에 따른 국내제도 개선방안 연구』(공저, 2003) 외

정책연구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2005년 12월 20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예당문화인쇄 전화: 2279-3202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1243-0 94320 정가 7,000원
89-322-1072-1(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05-23

A Study on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for Professionals and Non-Financial Businesses in Korea

Hyungdo Ahn and Jonghyuk Kim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범죄자들은 자금세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문직과 비금융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고 자금세탁자로부터 이 직종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과 거래를 육성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2432 94320>
ISBN 89-322-1243-0
ISBN 89-322-1072-1 (세트)

정가 7,000원